

한국장애인재단 2026-03

장애인단체의 개념 정립과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이승기

황의태·문영임·김보미·송채은·장진영

한국장애인재단 2026-03

장애인단체의 개념 정립과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이승기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동연구진	황의태	우석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
	문영임	한국장애인재단 장애통합연구본부장
	김보미	한국장애인재단 장애통합연구본부 연구원
	송채은	한국장애인재단 장애통합연구본부 연구원
	장진영	한국장애인재단 장애통합연구본부 연구원

본 연구보고서의 연구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한국장애인재단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5
3. 연구방법	6
II. 이론적 배경 및 개념 고찰	7
1. 국내 장애인단체 개념 정의	9
2. 국내 장애인단체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사회적 기여	13
3. 장애인단체의 역할요인	15
4. 해외 장애인단체 개념 정의	21
5. 주요국의 장애인단체 정의	23
III. 장애인단체 개념 정의를 위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31
1. 전문가 델파이조사 개요	33
2. 조사 결과	37
3. 장애인단체 정의 기준 도출	48
IV. 장애인단체 개념 정의 및 유형화	51
1. 장애인단체의 개념 정의(안)	53
2. 장애인단체 유형 분류체계	56

V. 정책적 함의 및 제언	63
1. 정책적 함의	65
2. 제언	66
참고문헌	69
부록	71
1. 전문가 델파이조사 1차 설문지	71
2. 전문가 델파이조사 2차 설문지	78



표 목차

〈표 2-1〉 선행연구 내 장애인단체 정의	12
〈표 3-1〉 전문가 패널의 일반적 특성	34
〈표 3-2〉 델파이조사 절차	35
〈표 3-3〉 델파이조사 문항 구성	37
〈표 3-4〉 1차 델파이조사 결과 - 대표성	39
〈표 3-5〉 1차 델파이조사 결과 - 목적성	42
〈표 3-6〉 1차 델파이조사 결과 - 제도적 기준	43
〈표 3-7〉 2차 델파이조사 결과 - 대표성	45
〈표 3-8〉 2차 델파이조사 결과 - 제도적 기준	47
〈표 3-9〉 델파이조사 종합	50
〈표 4-1〉 장애인단체 유형별 개념	58
〈표 4-2〉 장애인단체 단계별 유형 분류	61
〈표 4-3〉 장애인단체의 제도적 기준	62



그림 목차

[그림 4-1] 장애인단체 유형 분류체계	57
------------------------------	----

I. 서론

1. 연구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방법

I. 서론

1. 연구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 장애인단체의 사회적 중요성 확대

-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의 권익 보호, 사회참여 촉진, 정책 제언, 지역사회 변화 유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조직임
- 최근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장애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장애인단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2) 국내 장애인단체 개념의 불명확성과 정책적 한계

- 국내에서는 ‘장애인단체’라는 용어가 정책 현장과 연구 영역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어떠한 조직을 장애인단체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일관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지원 대상의 범위 설정, 정책 집행, 자원 배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의 역할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에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장애인단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할 경우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정책 대상의 포괄 범위 역시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3) 한국장애인재단의 장애인단체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

- 한국장애인재단이 장애인단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과 원칙이 명확하지 않다면, 지원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우선 장애인단체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그 개념에 기초하여 지원체계의 방향과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함

(4) 장애인단체의 다양성과 유형화 필요성

- 장애인단체는 목적, 활동영역, 조직형태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를 단일한 범주로 포괄하는 것이 어려움
- 따라서 장애인단체의 개념 정의와 함께, 핵심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기준을 설정하여 분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는 향후 지원정책의 차별화, 평가 기준의 정교화, 지원 방식의 적합성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함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첫째, 국내 장애인단체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의 체계가 부족하고, 둘째, 장애인단체 개념의 불명확성은 지원정책의 기준 설정과 실행에 혼선을 초래하며, 셋째, 재단과 장애인단체 간의 관계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개념 정립, 유형화,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단체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에 기초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학술적·정책적·실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연구의 범위

1) 개념적 범위

- 본 연구는 ‘장애인단체’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초점을 둠
- 이는 장애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다양한 조직 가운데 어떠한 조직을 장애인단체로 규정할 수 있는지, 그 판단 기준과 핵심 구성요소는 무엇인지를 밝히는 작업을 포함함
- 이 과정에서 단체의 목적, 운영 주체, 장애인 당사자 참여 정도, 활동 내용,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또한 장애인단체의 개념 정립을 통해 개념의 적용 가능성과 정책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2) 내용적 범위

- 본 연구는 국내외 장애인단체 관련 논의와 실제 지원체계 전반을 포괄함
- 즉, 국내 장애인단체의 개념 정의, 해외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의 장애인단체 개념 정의 사례 검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장애인단체의 유형 분류체계 도출, 이를 토대로 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제시까지 포함함

3) 적용 범위

-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재단이 지원하는 장애인단체를 중심 대상으로 설정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적인 이론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재단의 지원 실무와 정책 설계에 활용 가능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둠



3. 연구방법

1) 기본 방향

- 본 연구는 장애인단체의 개념 정립과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문헌고찰, 전문가 델파이조사,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결합한 방식으로 수행함
- 이는 개념 정의의 이론적 타당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것임

2) 문헌고찰

- 국내의 문헌 고찰을 통해 국내에서 장애인단체가 어떠한 기준과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 왔는지를 분석함
- 동시에 해외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의 장애인단체 개념 정의 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논의와 비교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함

3) 전문가 델파이조사

- 학계 전문가, 현장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 이를 통해 장애인단체의 개념 정의에 필요한 핵심 요소와 기준에 대한 전문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함
- 특히 장애인단체의 개념과 유형 분류 기준, 정책적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타당성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활용함

II. 이론적 배경 및 개념 고찰

1. 국내 장애인단체 개념 정의
2. 국내 장애인단체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사회적 기여
3. 장애인단체의 역할요인
4. 해외 장애인단체 개념 정의
5. 주요국의 장애인단체 정의

II. 이론적 배경 및 개념 고찰

1. 국내 장애인단체 개념 정의

1) 장애인단체의 일반적 의미

- 사전적 의미에서 '단체'는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를 뜻하며, 이에 따라 장애인단체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체로 정의할 수 있음
- 다만 각 단체는 설립목적과 운영 프로그램이 고유하게 다르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단체를 하나의 개념으로 총괄하여 정의하기는 근본적으로 어려움(한국장애인재단, 2022; Wright, 1980)
- 장애인단체는 단순히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관을 넘어,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적 지지체계이자 개인의 삶의 질과 복지증진에 직접 기여하는 존재로 이해되어야 함
- 이에 따라 해당 단체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첫째는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과 지지적 서비스이며, 둘째는 정부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장애인의 대변자 기능임(전지혜, 원영미, 2019)
- 장애인과 단체의 합성어인 '장애인단체'는 특수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 혹은 장애인복지를 추구하는 사회복지 성격의 공익집단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 성격이 어느 단일 유형에 귀속되기 어렵다는 점이 개념화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19)
- 이와 같이 장애인단체 개념을 단일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까닭은 단체가 수행하는 기능의 다양성 및 특수성, 구성원의 이질성, 역사적·제도적 맥락의 복잡성에 기인함



2) 장애인단체 관련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는 장애인단체에 관한 국내 핵심 법적 근거로,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자립을 돕기 위하여 설립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받는 단체를 장애인단체로 규정하고 있음
- 이 조항은 국가가 장애인단체를 제도적으로 인식하고 지원하는 출발점이지만, 단체의 성격·유형·종사자 지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지위 보장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 「장애인복지법」 제64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는 1999년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지원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협의회 설립의 근거를 마련한 조항으로, 단체 간 연대·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음
 - 그러나 협의회는 구성요건, 운영방식, 의사결정 구조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미비하여 실질적인 협의 기능 수행에 한계 지적됨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장애인단체의 실질적 등록·운영 근거로 기능하며,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은 매년 평가 절차를 통해 단체를 사전 인증·사후 관리하는 체계를 규정함. 그러나 이 역시 장애인단체 및 종사자의 직업적 지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현장의 고용 불안정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결과적으로 국내 장애인단체 관련 법제는 ‘지원’을 위한 근거는 마련하고 있으나 장애인단체가 정확히 어떠한 곳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 즉 단체의 개념적 경계와 유형 분류 기준을 법령 차원에서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한계를 내재하고 있음

3) 장애인단체의 일반적 특성

- (비정부조직) 뜻을 같이하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정부의 규제나 간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단체의 목적을 위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민간조직임.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더라도 조직의 독립적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임
- (동질의 관심) 장애인복지의 특정 분야나 문제에 공통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결합하여 그 문제의 해결을 공동으로 추구하는 조직으로, 회원간의 공유된 문제의식이 단체 결성의 핵심 동인이 됨
- (민주적 이데올로기) 회원 간 동등한 권리, 자유로운 의사 표현, 참여 보장을 바탕으로 회원 스스로의 문제를 민주적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조직임. 이러한 자율성·민주성·참여 보장 구조는 CRPD 일반논평 제7호(2018)가 규정한 '대표성·독립성·의미 있는 참여' 기준과도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음
- (비영리조직) 이윤 추구가 아닌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조직임. 다만 최근 일부 단체들은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의 생산시설로 지정받아 영리사업을 통해 목적사업을 활성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순수 비영리조직으로서의 특성이 점차 희석되는 경향이 나타남

4) 선행연구 내 장애인단체 정의

- 국내에서 장애인단체를 주제로 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단체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며, 정의가 제시된 경우에도 연구자에 따라 그 강조점이 상이하게 나타남. 그러나 공통적으로 비영리성, 자발적 결사체로서의 성격, 권익옹호 기능,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네 가지 특성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어왔음
- 나운환(2001)은 장애인단체를 비정부·비영리 원칙 하에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시민사회단체로 규정하면서, 대표



성·책임성·투명성·자율성·연대성이라는 다섯 가지 역할요인을 핵심 구성 요소로 제시함

- 전지혜, 원영미(2019)는 장애인단체를 장애인 당사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변화를 이끄는 권익옹호 주체로 규정하면서,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역할 분리 필요성을 강조함
- 한국장애인재단(2022)의 장애인단체 현황 및 운영실태 연구에 따르면, 국내 선행연구들은 장애인단체의 개념을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① 당사자 중심성 ② 공익적 목적 ③ 비영리·비정부성 ④ 민주적 운영구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한 단일한 법적·학술적 정의는 여전히 부재한 상태이며, 이에 단체 정의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 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표 2-1〉 선행연구 내 장애인단체 정의

저자(연도)	연구명	정의
ESCAP (1991)	장애인 자조조직에 관한 전문가 회의	장애인에 의해 결정·통제되는 상호지지 및 대변(옹호) 기제를 갖추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강화하는 목적을 지닌 조직체
나운환 (2001)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역할 연구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시설과는 달리,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정책의 입안 및 여론 형성 등을 주도하는 집단
정무성 (2002)	장애인 자조단체의 전망과 과제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고 권익을 대변하며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인 욕구와 결정권을 갖는 조직체
이익섭 (2003)	장애인 당사자주의와 장애인권운동	불특정 다수의 장애인에게 공유되는 비영리·공익단체로, 장애인을 대표하여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실천적 주체
유동철 (2005)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지방이양에 따른 장애인단체의 역할	자발적 동기와 신뢰에 기반한 조직으로, 상호지지 체계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조직
강민수 (2008)	장애인단체장의 민주성 정도와 조직활동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자조집단·압력단체·NGO·비영리조직 등의 성격을 공유하며, 장애 대중의 공익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조직

저자(연도)	연구명	정의
보건복지부 (2015)	효율적인 민·관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장애인단체 역량강화 방안	장애인 역량강화·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상호지지 체계를 활용해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한국장애인 단체총연맹 (2019)	장애인단체 실무자 매뉴얼	넓은 의미로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자립을 돕기 위함에 목적을 둔 집단(설립목적과 성격에 따라 활동 양상이 다양하여 단일 정의가 어려움)
한국장애인 재단(2022)	2021년 장애인단체 현황 및 운영실태 연구 보고서	물리적 편의시설·공간 확보 유무와 무관하게,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사회통합·자립·권리옹호를 위해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행동을 수행하는 조직

출처: 한국장애인재단. (2022). 2021년 장애인단체 현황 및 운영실태 연구 보고서 재구성.

2. 국내 장애인단체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사회적 기여

1) 한국 장애인단체의 형성과 성장

-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단체는 일제강점기인 1927년 설립된 반도맹인회(현 맹인복지연합회)로 거슬러 올라가며, 1946년에는 농아인의 자립·자조 활동을 위한 조선농아협회(현 한국농아인협회)가 창립됨
- 1954년에는 한국불구자협회(현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설립되어 최초로 법인 단체 등록을 함으로써 공식적인 장애인단체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나운환 외, 2024)
-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는 한국의 장애인단체 발전에 일대 전환점으로, 이 해를 기점으로 장애 유형별 단체들이 급속히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도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체계를 본격화함
-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장애인복지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제45조(현 제63조)에 장애인단체 보호·육성 근거가 명문화됨으로써, 국가가 장애인단체를 제도적으로 승인하는 법적 틀이 갖추어



집(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25)

- 1990년대 이후에는 장애인 인권운동을 전면에 내세우는 새로운 유형의 단체들이 등장함. 1994년 설립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공익소송, 교육 차별금지 등 인권 의제를 선도하였으며, 1999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2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창립은 협의체 형태의 조직화를 통해 장애 의제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음
- 2000년대 이후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등급제 폐지, 이동권 보장, 탈시설화 등을 요구하는 사회운동적 연대체로서 기능함
- 2025년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는 개별단체 25개, 협의체 성격 단체 10개 등 총 35개이며, 지방자치단체 등록 단체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1,000개 이상의 장애인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와 같이 단체의 양적 규모는 크게 성장한 것으로 보이나 운영 재정의 국가·지자체 의존성, 전문 인력 운영의 어려움, 단체 간 갈등, 비민주적 의사결정, 불투명한 회계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질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2) 장애인단체의 사회적 기여

- 한국의 장애인단체는 단순한 복지서비스 전달을 넘어,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사회구조 변화를 이끄는 핵심 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주요 성과를 이끌어 옴
- **(인권운동 및 권리개념화)** 교육·고용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장애인 차별 사례에 대응하여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익소송, 성명서 발표, 집단행동 등의 방식으로 권리를 획득해 왔음
 - 2001년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 회의의 버스타기 투쟁은 '교통약자', '이동권' 등의 새로운 권리 개념을 사회에 확산시키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임
- **(정책의제 형성 주도)**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들은 의제 설정부터 법안 내용 설계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 발달장애인법,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연금 등의 제도 역시 장애인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와 운동이 없었다면 실현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됨

- **(정치참여 확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비례대표 장애인 포함, 장애 관련 공약 반영 등을 통해 정치의 대상에서 정치의 주체로 전환을 이끌어냈으며, 국가 주요 정책위원회에 장애당사자 참여를 관철시켜 장애감수성이 반영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3. 장애인단체의 역할요인

- 장애인단체의 역할요인은 단일한 근거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사회의 장애 관련 선언·권고·협약, 비영리 조직론의 이론적 논의, 장애인단체 설립 고유의 제도적 특성이라는 세 차원의 교차점에서 도출되어야 하는 복합적 개념임
- 이에 각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되거나 장애인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추가된 요인을 중심으로 역할을 구분 필요함

1) 이론적·규범적 근거

(1) 국제 규범 차원

- UN 및 산하기구를 비롯하여 세계재활협회(RI), 세계장애인연맹(DPI) 등 주요 국제장애기구는 장애정책의 수립부터 서비스 제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적 합의는 장애인단체의 기능적 역할에 대한 규범적 정당성의 근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규범적 토대로 기능함
-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일반논평 제7호는 장애인단체의 대표성과 독립성, 그리고 정책 과정에서의 의미 있는 참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단체 역할요인의 국



제기준을 확립하는 핵심 규범 문서로서 본 연구의 이론적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됨

- UN의 장애 관련 권리선언 및 행동지침은 장애인단체의 역할 범위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 서비스 모니터링, 전문적 자문의 세 영역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단체가 수동적 수혜 주체가 아닌 능동적 정책 행위자임을 확인할 수 있음

(2) 비영리 조직론 차원

- 비영리 조직의 역할요인을 다룬 선행연구들(박상필, 1999; 나운환, 2001)은 비정부성·공익성·자율성·연대성·책임성·투명성을 공통 구성요인으로 제시함. 이에 장애인단체는 법인격 측면에서 비영리 조직에 해당하므로 이 요인들을 기본적으로 공유하며, 이를 출발점으로 장애인단체 고유의 역할요인을 추가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음
- 미국시민연맹(National Civic League)이 2013년 개발하고 2019년 개정한 시민지수 제4판(The Fourth edition of the National Civic League's Civic Index)은 비영리 조직의 역할요인으로 지역사회 대표성과 리더십, 공공정책 참여, 역동성과 통합성, 의사소통과 네트워크, 연대성, 책임성, 비전을 제시한다. 이는 장애인단체의 역할요인을 구성하고 비교하는 데 유효한 준거틀로 활용될 수 있음
- 장애와 관련한 조직이 당사자의 인권증진과 재활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인증기준인 CARF(the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rehabilitation facilities)에서는 장애 관련 조직의 인증 기준을 거버넌스·리더십·인권·서비스 질 관리의 네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음

(3) 국내 법제도 차원

-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단체의 역할을 장애인 복지증진과 자립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역할요인이나 이행 기준은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음
- 장애인단체는 공적 지원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의 권익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표방하는 조직으로서, 회원과 지역사회로부터 설립 목적의 이행 여부를 검증받아야 할 사회적 책임을 지님. 아울러 단체 운영 과정과 재정 사용 내역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해야 할 투명성의 요구 역시 조직의 공익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 두 요인은 장애인단체의 공익적 정체성에 내재된 역할요인으로 도출됨
- 장애유형별 조직체는 특정 장애집단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유일한 공식 주체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음. 이처럼 대체 불가능한 대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해당 집단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는가의 여부, 즉 대표성의 실질적 확보는 단체 존립의 정당성과 직결됨

2) 역할요인별 개념 및 구성 내용

- 이상의 논거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단체의 역할요인의 개념과 구성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1) 대표성(Representativeness)

- 대표성은 장애인단체가 실제로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요인임. CRPD 일반논평 제7호(2018)는 대표성을 장애인단체 인정의 핵심 기준으로 규정하며, 단순한 수적 비율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참여와 통제 구조를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의결기구(이사회 또는 총회) 내 장애인 포함, 회원 구성에서의 장애인



다수성, 대표자의 당사자성 확보가 대표성 판단의 주요 지표임

-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 비율보다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실질적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절차적 장치(자문기구, 의견수렴 구조 등)를 통한 대표성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함. 가족단체, 전문가단체 등 당사자와 구성원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어 있어, 대표성의 경계 설정이 개념 정립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됨

(2) 책임성(Accountability)

- 책임성은 장애인단체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공익적 사업을 운영하고, 자체적인 성과 모니터링과 환류가 이루어지며, 이를 수행하는 직원과 사무국이 전문성을 유지하는지를 확인하는 요인임
- 장애인단체는 장애와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해 공중 의제를 형성하고,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여 사회적·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필요시 압력 단체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함. 또한 사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운영보고서, 연구결과 등을 수집·분석하여 조직 운영에 환류해야 하며, 특히 인적자원의 전문성 확보와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 현장에서는 단체 담당자 교체 빈도가 높아 교육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됨. 이는 단발성 교육·지원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단체의 조직 역량이 개인에 귀속되지 않고 조직 차원의 시스템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3) 투명성(Transparency)

- 투명성은 장애인단체가 회원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당사자 및 사회로부터 운영이 내·외부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의미함
- 장애인단체는 대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는 공적 책임의 이행이라는 차원

에서 더욱 중요하게 요구됨

-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결산의 공개, 외부 감사,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윤리강령의 문서화 및 준수, 자체 감사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며, 최근 일부 장애인단체에서 발생한 비리 및 비윤리적 사례들로 인해 장애계 전반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리경영과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의 구축은 단체의 존립 기반을 다지는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4) 자율성(Autonomy)

- 자율성은 장애인단체가 정부나 정치체제에 의존하지 않고 단체 본연의 목적과 성격에 부합하는 원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의미하며, 장애인단체가 비영리 민간 이익단체로서의 역동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의 실질적 자율성 확보가 필수적임
- 그러나 현실에서 대부분의 장애인단체는 재정의 국가·지자체 의존도가 매우 높아 단체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이 제한되는 한계 존재하며, 이에 회원 회비 및 민간자원 개발을 통한 자생적 재정 역량의 구축이 요구되나 장애인 회원의 경제적 어려움과 기부문화의 미성숙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로 판단됨
- 뿐만 아니라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정치적 독립성 확보, 임원 선출의 민주적 절차 보장도 자율성의 주요 지표로 제시됨
- CRPD 일반논평 제7호는 정부의 사업별·프로젝트별 예산 지원 방식이 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체가 스스로의 아젠다를 설정하고 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 형태의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5) 연대성(Solidarity)

- 연대성은 장애인단체가 다양한 인적자원·조직들과 연대활동을 통해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요인임. 장애인의 삶과 관련된 사회문제들은 의·식·주에서 이동, 건축편의, 정보통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영역 간의 연대와 협력은 필수적이다.
- 장애인단체 간 공동의제 형성의 어려움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과제임. 이해관계의 충돌, 유사 사업 중복으로 인한 경쟁 구도, 소수 단체의 소외 문제 등이 연대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체 간 공동의제를 발굴하고 협력 구조를 구축하는 중간 지원 체계의 역할이 중요함

(6) 인권기준(Human Rights Standards)

- 인권기준은 장애인단체가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동시에 조직 내·외 관계자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요인임
-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패러다임이 복지 기반에서 인권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장애인단체에 요구되는 인권 기준의 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
- 미국의 재활시설인증위원회(CARF)의 인권기준은 장애인단체에 적용 가능한 주요 준거틀을 제공함. 이는 회원·서비스이용자·직원에 대한 인권 고지 및 교육,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학대·차별 예방, 고충처리 절차의 제도화, 연 1회 이상의 인권 관련 심의 실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장애인단체는 이 같은 내부적 인권 보장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외적 인권옹호 활동의 도덕적 근거를 강화할 수 있음

4. 해외 장애인단체 개념 정의

1) 국제기구의 장애인단체 인식

(1) UN 「장애인의 기회평등화에 관한 기본규칙」(Standard Rules, 1993)

- 1993년 제48차 UN 총회 결의로 채택된 「장애인의 기회평등화에 관한 기본규칙」은 장애인단체의 역할을 국제적으로 처음 체계화한 문서 중 하나임. 동 규칙은 각 회원국이 장애인단체를 통해 ① 법률·정책 개발 참여, ② 장애 관련 의사결정 참여, ③ 연구 협력, ④ 회원 간 정보·경험 교류를 수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장애인단체를 단순한 서비스 주체가 아닌 정책 파트너로 공식화함

(2) UN 아태장애인 10년 행동계획(1993) 및 비와코 새천년 행동계획(2002)

- 아태장애인 10년 행동계획(1993)은 12개 분야 중 장애인 자조 단체 역할을 별도로 명시하고, 단체의 역할로 다양한 프로그램 집행, 장애여성·발달장애인 지원, 정서·정신장애인 지원, 전국 단위 토론·포럼 개최, 통계 수집, 정부와의 협의기구 설립 등을 제시하였음. 이는 장애인단체가 수행해야 할 기능의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초기 국제 문서로서 의의가 있음
- 비와코 새천년 행동계획(2002)의 정책지침 14는 장애인단체가 중심이 되어 장애 관련 정책의 시행·점검을 위한 국가조정위원회를 설립하거나 강화하도록 명시하였으며, 특히 장애인단체가 여성장애인·신장장애인·지적장애인 등 소외된 하위 집단의 참여와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함. 이는 단체 내부의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임



(3) UN CRPD 일반논평 제7호(2018)

-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8년 11월, 협약 제4조 제3항(긴밀한 협의 및 적극적 참여)과 제33조 제3항(이행·감시 과정 참여)에 관한 해석을 제공하는 일반논평 제7호를 채택하였음. 이 논평은 '대표 단체 (representative organisations)'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함으로써 어떤 조직이 장애인단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처음으로 체계화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지님(국가인권위원회, 2020; ENIL, 2022)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에 의해 주도·감독·경영되는 단체에 한정되며, 회원 대다수가 장애인 중에서 모집되어야 함. 또한 장애 여성, 장애 아동, HIV/AIDS 환자 단체도 협약상 장애인단체로 간주됨
- 장애인단체의 구체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됨. (a) 장애인의 권리를 조직적으로 행사·표현·고취·추구·옹호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설립, (b) 장애인 고용 및 대표성·지명·임명 확보, (c) 정당 미소속 원칙과 공공기관·NGO로부터의 독립성, (d) 특정 손상 또는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개방적 회원 자격, (e) 성별·인종·연령·이민자 등 다양한 배경 반영, (f) 지역·국가·역내·국제 범위에서의 다층적 활동 실행
- 한편 장애인단체의 유형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함
 - ① 상위 장애인단체(Umbrella Organisations)
 - 장애인 대표 단체들의 연합체이며, 의사결정 수준마다 1~2개만 존재하고 모든 장애인단체를 회원으로 수용하는 개방적·민주적 구조를 갖추어야 함. 개별 장애인 대신 단체 간 공통 이익에 관한 사항을 대표하여 발언해야 함
 - ② 범 장애인단체(Cross-disability Organisations)
 - 다양한 손상 영역 모두 또는 일부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며, 지역 및 전국 수준에서 조직됨
 - ③ 자기옹호 단체(Self-advocacy Organisations)
 - 주로 지적장애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로써 시설 입소자·투표권이 거부된 사람

등 법적 능력 행사를 방해받는 장애인의 정치 참여 및 의사결정 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함

④ 가족 구성원 단체

- 장애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을 둔 부모·친척·양육자로 구성된 단체로, 당사자의 자율성과 적극적 참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협의·의사결정·모니터링 과정에 포함되어야 함

⑤ 장애여성단체 및 장애아동·청소년 단체

- 각각 센터 평등 정책 관련 협의 과정 참여와 공적·지역사회 생활에서의 아동 참여를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함

5. 주요국의 장애인단체 정의

1) 미국

(1) 법적·제도적 근거

- 미국의 장애인 관련 단체 활동은 크게 두 축의 법적 근거 위에서 이루어짐
-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 Title VII은 자립생활센터(CIL)의 설립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근거로 장애인에 의해 운영되는 지역사회 기반 조직에 연방 재정 지원을 명문화함
- 「미국장애인법」(ADA, 1990)은 장애인단체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차별 없는 시민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토대를 제공하였음
- 단체 자체에 대한 법적 정의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나 연방 비영리법인 요건인 IRS 501(c)(3) 면세 지위가 단체 운영의 제도적 틀로 기능함

(2) 자립생활센터(CIL :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 자립생활센터(CIL)는 장애인에 의해 설계·운영되는 지역사회 기반·범 장애·비영리 조직으로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직접 운영 및 감독하는 '소비



자 통제(consumer control)' 원칙이 핵심임

- 이사회 및 직원의 50%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하도록 요건화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단체가 당사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함
- 자립생활센터(CIL)의 기원은 1972년 Ed Roberts가 버클리에 설립한 최초의 자립생활센터로, 현재는 미국 전역 400여 개 이상이 운영 중임 (NCIL, 2024)
- 자립생활센터(CIL)는 단순한 서비스 기관에 그치지 않고, 접근성 향상·반차별 정책·독립생활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시스템 옹호의 핵심 주체임
- 자립생활센터(CIL)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5대 핵심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며, 이러한 내용은「재활법」에 명시되어 있음
 - ① 정보 제공 및 의뢰(Information and Referral)
 - ② 개인·시스템 옹호(Individual and Systems Advocacy)
 - ③ 동료 지원 및 상담(Peer Support and Counseling)
 - ④ 자립생활기술 훈련(Independent Living Skills Training)
 - ⑤ 시설→지역사회 전환 및 시설 입소 예방 서비스(Transition Services)

(3) 전국자립생활협의회 및 미국 장애인단체의 유형

- 전국자립생활협의회(National Council on Independent Living, 1982년 설립)는 미국 최장기 범 장애 옹호 조직으로 개별 자립생활센터(CIL), 주별 자립생활위원회(SILCs), 관련 단체 및 장애인 개인을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시민권·인권 옹호, 정책 자문, 의회 증언, 입법 과정 참여 등을 통해 'Nothing About Us Without Us' 원칙을 실천하는 전국적 플랫폼으로 기능함
- 미국의 장애인 관련 단체는 유형 면에서 상당히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음. 자립생활센터(CIL)는 지역기반 서비스와 옹호를 병행하고, The Arc·Autism Society 등은 가족·부모 중심의 조직으로 운영됨

- 진단별 조직(MS Society, ALS Association 등)은 특정 의료적 진단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있으며, DREDF(Disability Rights Education & Defense Fund) 등은 법률 옹호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임

2) 영국

(1) 법적·제도적 근거

- 영국의 장애인단체 활동은 「평등법」(Equality Act 2010)의 장애차별 금지 및 합리적 조정 의무 규정을 핵심적인 법적 근거로 삼고 있으며, 자선위원회(Charity Commission)의 자선단체 등록·감독 체계 안에서 운영됨
- 영국은 CRPD 비준국으로서 일반논평 제7호의 기준을 단체 인정 기준에 적극 반영하고 있음

(2) Disability Rights UK(DR UK)의 DPO 정의 및 인정 기준

- DR UK는 DPO(Disabled People's Organisation)를 '장애인이 주도하고 관리하는 단체'로 정의하며, 비대표적 자선단체(non-representative charities)와의 차별성을 명확히 강조함
- 단체를 DPO로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으로 이사회(Board) 최소 75% 이상 장애인, 직원(Staff) 최소 50% 이상 장애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사회적 모델(Social Model of Disability)에 기반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함을 명시함
- 이는 CRPD 기준(파반수) 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장애인 운동의 진정한 목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영국 고유의 기준임
- DR UK는 DPO 분야가 다양한 조직과 네트워크가 중층적으로 얹혀 있는 복합적 생태계를 전제하면서도 ① 인력 구성 요건상 DPO에 해당함에도 스스로를 DPO로 규정하지 않는 조직의 존재, ② 학습장애인 등 특정 집단이 주류 장애인 운동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어 온 대표성의



공백, ③ 인종·젠더·계층 등 복합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교차성(intersectionality)이 운동 내에서 충분히 구현되지 못해 온 구조적 한계를 핵심 과제로 명시하고 있음

- 이는 DPO의 개념과 경계가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운동의 내적 다양성과 사회적 맥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있는 열린 개념임을 방증함(Disability Rights UK, 2023)

(3) 장애인단체의 가치와 역할

- DPO는 주류 사회에서 충분한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이 자신의 경험과 관점을 공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 공간으로 기능함
- 특히 서비스 중심 DPO는 법률 상담·재정 지원·사회적 지원·직업 훈련 등 다양한 영역의 지원을 통해 필수 서비스 접근 과정에서 복합적 장벽에 직면한 장애인의 실질적 필요를 충족하는 핵심 전달 기제로서의 역할 수행함
- 그러나 이러한 DPO의 역할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장애 관련 재정 중 97.3%가 비대표 조직에 집중되는 반면 장애인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DPO에는 극히 일부만이 배분되는 구조적 자원 불평등이 확인된 바 있음(Disability Rights UK, 2023)
- 다수의 DPO가 단기 프로젝트성 자급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재정 구조 속에서 장기적·구조적 옹호 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며, 이는 단체의 조직 역량 강화와 활동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핵심 구조적 과제로 지적됨

3) 일본

(1) 법적·제도적 근거

- 일본의 장애인 정책 체계는 「장애인기본법」(障害者基本法, 1970년 제정)을 근간으로 하며, 사회적 맥락의 변화와 국제적 기준의 발전에 따라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형태에 이르고 있음
- 특히 2011년 「장애인기본법」 개정은 2014년 CRPD 비준을 위한 국내법 정비의 핵심 선행 입법 조치로서 장애를 개인의 손상이 아닌 사회구조와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사회적 모델의 관점에서 '사회적 장벽(社会的障壁)' 개념을 법령에 최초로 명문화하였으며, '합리적 배려(合理的配慮, reasonable accommodation)' 의무를 제도화함으로써 일본 장애인 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견인하였음 (Cabinet Office, Japan)
- 「장애인종합지원법」(障害者総合支援法, 2012)은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전반을 규율하는 핵심 법령이며, 지정 복지서비스 사업자·지정 지원시설·지정 상담 지원 사업자 등 서비스 공급 주체의 유형과 지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서비스 전달체계의 법적 기반을 정립하고 있음
- 「사회복지법」(社会福祉法)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운영의 제도적 틀로 기능함
- 「장애인고용촉진법」은 법정고용률 제도(민간기업 현행 2.5%, 2026년까지 2.7%로 단계적 상향 예정)를 통해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고용 영역에서의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



(2) 주요 전국 장애인단체

① 일본장애포럼

- 일본장애포럼(Japan Disability Forum, 2004년 설립)은 11개 주요 DPO와 2개 NGO로 구성된 네트워크 조직이며, CRPD 비준 운동의 핵심 주체 역할을 수행해 왔음
-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에는 재난 상황에서의 장애인 지원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 종합지원본부'를 신속히 설치하고, 정책 제언·현장 직접 지원·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옹호하는 긴급 대응 역할을 수행한 바 있음

② 일본장애인협의회 및 일본장애인연맹

- 일본장애인협의회(Japan Council on Disability)는 DPO·NGO·전문가 단체를 아우르는 연합체 조직으로, 장애 분야 전반에 걸친 정책 협의와 입법 활동을 주도하는 범 장애계 협력 플랫폼으로 기능함
- 일본장애인연맹(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Japan, 1986년 설립)은 DPI의 일본 국가지부로서, 2023년 4월 기준 신체·지적·정신·난치병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을 포괄하는 91개 단체를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organization of disabled people), 모든 장애 유형을 포괄하는 범 장애 조직(cross-disability), 인권적 관점에서 장애 문제를 사회적 과제로 접근하는 조직이라는 세 가지 핵심 특성을 토대로 'Nothing About Us Without Us' 원칙에 기반한 당사자 주도의 권리 옹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DPI-Japan, 2023)

4) 호주

(1) 법적·제도적 근거

- 2010년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과 「국가장애보험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를 통해 장애인 지원 체계를 운용
- 호주의 장애인단체 개념은 DPO의 국제적 기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장애인단체 인정의 핵심 기준은 당사자 주도성으로 간주함

(2) 주요 전국 장애인단체

- ① 호주 장애인네트워크(Disability Advocacy Network Australia, DANA)
- 장애인 권익옹호 단체의 인증 기준을 운용하며, 이 기준에는 당사자 통제 구조, 권익옹호 활동의 독립성, 재정 투명성 등이 포함됨. 특히 국가장애보험제도(NDIS) 도입 이후 서비스 제공자와 권익옹호 단체의 역할 분리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었으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동일 조직이 두 역할을 겸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 방향이 강화되고 있음

5) 종합

- 국제적으로 장애인단체를 인정하는 공통 기준으로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비율이 핵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대부분의 국가에서 구성원의 51% 이상을 장애인 당사자로 요구하는 것을 최소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이사회 75%·직원 50%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다만 단순한 비율 충족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당사자가 조직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당사자 통제(controlled by)’ 원칙이 구성비율 요건과 함께 강조된다는 점에서,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운영 원칙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임



- 다수 국가에서 사회적 장애 모델(Social Model of Disability)을 DPO의 핵심 철학적 기반으로 채택하고 있음. 장애를 개인의 결함이 아닌 사회적 장벽과 구조적 문제의 산물로 이해하는 이 관점은 'Nothing About Us Without Us'가 상징하는 당사자 주권 원칙과 결합하여 장애인단체가 비장애인 주도의 자선단체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이념적 기반 형성함
- 각국의 장애인단체는 제도적 맥락과 역사적 배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 자문 및 이행 모니터링, 장애인 권리 옹호(Advocacy), 서비스 제공 및 동료 지원(Peer Support), 대중 인식 개선 및 사회적 태도 변화라는 네 가지 공통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서비스 제공 기능과 권리 옹호 기능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수행될 때 단체의 효과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두 기능을 상호 보완적 관계로 설계하는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함

Ⅲ. 장애인단체 개념 정의를 위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1. 전문가 델파이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3. 장애인단체 정의 기준 도출

Ⅲ. 장애인단체 개념 정의를 위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1. 전문가 델파이조사 개요

-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재단의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장애인단체의 개념 정립과 체계적인 유형화를 통해 지원 기준 마련과 정책 적용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수행되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개념 정의 및 기준 설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 합의를 도출하는 델파이조사 방법을 적용함
- 이에 장애인단체 개념 정의 관련 선행연구와 특히, 국제법에서 정의하는 장애인단체 개념을 탐색하여, 장애인단체의 대표성, 목적성, 제도적 기준을 중심으로 개념을 구조화하여 델파이조사 설문 문항을 도출하였음
- 델파이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패널은 장애인 실천현장, 학계 등의 전문가 1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2026년 1월 20일부터 2월 24일까지 총 2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음

1) 전문가 패널

- 델파이 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은 전문가 패널 구성에 좌우되며, 일반적으로 10~50명 규모의 전문가 집단 구성이 권장됨(Hsu & Sandford, 2007; Rowe, Wright, & Bolger, 1991)
- 이에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패널은 장애분야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로 특히, 장애인단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패널로 총 18명으로 선정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성별은 남성 13명(72.2%), 여성 5명(27.8%)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이들의 연령 분포는 50대가 11명(61.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대 5명(27.8), 40대 2명(11.1%)의 순으로 나타남



- 소속기관은 장애인단체 10명(55.6%), 대학 및 연구소 6명(33.3%), 장애인복지관 2명(11.1%)의 이었으며, 이들의 직위는 국장 및 사무총장이 8명(44.4%), 교수 6명(33.3%), 관장 및 대표 4명(22.2%)으로 나타남
- 장애분야 경력은 전문가 패널 18명 중 14명(77.8%)이 20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최종학력은 박사가 9명(50.0%)이었으며, 석사가 7명(38.9%), 학사가 2명(11.1%)이었으며, 이들의 전공은 13명(72.2%)이 사회복지, 재활은 2명(11.1%), 특수교육 1명(5.6%), 비정부기구 1명(5.6%), 컴퓨터공학 1명(5.6%)의 순이었음

〈표 3-1〉 전문가 패널의 일반적 특성

연번	성별	연령대	소속기관 ¹⁾	직위	장애분야 경력(개월)	최종 학력	전공
1	남	40대	장애인단체	국장	26	석사	사회복지
2	남	60대	장애인단체	관장/대표	310	박사	재활상담
3	여	50대	장애인단체	사무처장	40	박사	사회복지행정
4	남	60대	장애인단체	관장/대표	390	석사	특수교육
5	여	40대	장애인단체	국장	189	학사	컴퓨터공학
6	남	50대	장애인단체	사무총장	300	석사	사회복지
7	남	50대	장애인단체	사무총장	210	학사	사회복지
8	남	50대	장애인단체	사무총장	360	석사	사회복지정책
9	남	50대	장애인단체	사무총장	240	석사	비정부기구
10	남	50대	장애인단체	사무총장	385	박사	사회복지
11	여	50대	장애인복지관	관장/대표	368	박사	사회복지
12	여	50대	장애인복지관	관장/대표	396	석사	사회사업정책
13	남	60대	대학 및 연구소	교수	372	박사	사회복지
14	남	60대	대학 및 연구소	교수	360	박사	사회복지
15	남	60대	대학 및 연구소	교수	302	박사	재활
16	여	50대	대학 및 연구소	교수	384	박사	사회복지
17	남	50대	대학 및 연구소	교수	335	박사	사회(장애인)복지
18	남	50대	대학 및 연구소	교수	276	박사	사회복지

¹⁾ 소속기관의 장애인단체는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기준임.

2) 조사 절차

- 본 연구는 2026년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총 2차례에 걸쳐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상 방식은 전문가 패널의 e-mail을 통해 진행하였음
- 일반적으로 델파이조사는 개방형 설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구성하고, 2회차 이상의 반복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충분한 기초자료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개방형 조사 단계를 생략한 수정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조화된 설문지를 기반으로 1차 및 2차 델파이조사만을 실시함(임운진, 2022; 채혜선, 고명선, 박수인, 김인수, 2023; Murry & Hammons, 1995)

〈표 3-2〉 델파이조사 절차

절차	내용	일정
1차 델파이	· 총 18명(현장 12명, 학계 6명)	2026.1.20.~2026.2.2.
↓		
1차 응답 분석 및 2차 설문지 작성	· 대표성, 목적성, 제도적 기준에 따른 문항별 평균, 표준편차, CVR 등 계량적 결과 및 수정 의견 분석 · 연구진 협의를 통한 2차 설문 재구성	2026.2.3.~2026.2.12.
↓		
2차 델파이	· 총 17명(현장 11명, 학계 6명)	2026.2.13.~2026.2.21.
↓		
최종분석	· 장애인단체 정의 및 유형 도출	2026.2.22.~2026.3.3.



3) 자료 처리 및 분석

- 본 연구에서 수집된 델파이조사 자료는 SPSS와 Excel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 각 문항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응답 경향과 분포를 파악하고, 추가적으로 사분위수, 내용타당도비율(CVR: Content Validity Ratio), 합의도, 수렴도를 함께 분석하였음
- 내용타당도비율(CVR)은 Lawshe(1975) 제안한 패널 수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 기준값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산출된 값이 기준 이상일 경우 해당 문항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음
- 또한 전문가 의견의 일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합의도와 수렴도를 함께 산출하였으며, 합의도는 1에 가까울수록, 수렴도는 0에 가까울수록 의견이 일관되게 수렴된 것으로 해석하였음(이종성, 2001)
- 이와 같은 정량적 분석 절차를 통해 각 문항의 타당성과 정책 적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4) 조사 도구

- 본 연구의 델파이조사는 장애인단체의 개념 정립과 분류체계 구축을 위해 ‘대표성’, ‘목적성’, ‘제도적 기준’의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조사도구를 구성하였음
- 대표성은 단체가 실제로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의결기구 및 회원 구성에서의 장애인 참여, 대표자의 당사자성, 장애인 범주 설정, 그리고 장애인단체로 인정할 수 있는 조직 유형 등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였음
- 목적성은 단체의 비전과 주요 사업이 장애인의 권익 증진, 역량 강화,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설립 목적의 공익성 및 사업 내용의 적합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음
- 제도적 기준은 해당 단체가 공적으로 인정받고 재정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등록 여부, 기본적인 조직 구조, 활동 실적, 운영 경력 등 조직의 제도적 기반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음

○ 조사도구의 구성은 아래와 같음

〈표 3-3〉 델파이조사 문항 구성

델파이조사 차수	문항구성
1차 조사	총 26문항(대표성 16개, 목적성 3개, 제도적 기준 7개)
2차 조사	총 14문항(대표성 10개, 제도적 기준 4개)

2. 조사 결과

1) 1차 델파이조사 결과

- 1차 조사는 대표성 16개 문항, 목적성 3개 문항, 제도적 기준 7개 문항 등 총 26개 문항에 대해 적절성(5점 척도), 현장 적용 가능성(5점 척도)을 조사하였으며, 설문지는 배포된 18부 모두를 회수하였음
- 1차 조사의 CVR 값은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패널 18명을 고려하여 기준값을 0.47로 설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음

(1) 대표성

- 장애인단체를 정의하기 위한 대표성 기준 문항의 적절성에 대한 CVR 값은 ‘1-1. 장애인단체의 최고 의결기구(이사회 또는 총회) 구성원에는 장애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1.00, ‘1-4. 장애인단체의 회원은 장애인(또는 장애인단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00, ‘1-6-1. 장애인단체의 대표성 판단 시, ‘장애인 당사자’를 장애인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0.89, ‘1-7-1. ‘장애 유형별 당사자조직(예: 시각·청각·지체장애인 연합회 등)’을 장애인단체로 간주하여야 한다.’ 0.89로 기준값인 0.47를 상



회하여 전문가 패널들이 해당 문항을 장애인단체를 정의하기 위한 기준으로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음

- 이와 같은 결과는 적용 가능성 측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1차 조사에서 종료하여 2차 조사에서는 제외하였음
- 다만, '1-7-2. '장애인 연합조직 또는 범장애 우산조직(예: 한국장애인 단체총연맹, DPI 등)'을 장애인단체로 간주하여야 한다.' 항목은 적절성과 적용 가능성의 CVR 값이 각각 0.56, 0.67로 기준값(0.47)을 상회하였으나, 전문가 패널 의견을 반영하여 2차 조사에 수정하여 포함하였음
- 그러나 장애인 범주 확장에 대해 활동가, 전문가의 인정여부에 대한 문항과 장애인단체 확장에 대해 연구 및 학술단체, 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정여부에 대한 문항은 CVR 값뿐만 아니라 전문가 패널 의견에서도 부정적으로 나타나 삭제 처리(기각)하고 2차 조사에서 제외하였음
- 결과적으로 대표성 문항 16개 중 4개 문항은 의견합치로 1차 조사에서 종료하였으며, 4개 문항은 부정적 의견으로 1차 조사에서 종료(기각) 처리하여 2차 조사에서는 8개 문항에 대해 전문가 패널 의견을 반영한 수정 문항으로 진행하였음
- 전반적으로 장애인단체의 대표성은 장애인 당사자 중심성 확보가 핵심 기준이라는 데 높은 합의가 형성되었으며, 특히 의결기구 내 장애인 포함, 회원 구성 내 장애인 포함 등은 높은 타당도와 합의 수준을 보임
- 그러나 전문가 패널은 수정의견으로 단순 수적 기준의 한계에 대한 의견으로 과반수 기준(50%)에 대해 의견이 나뉘었으며, 대표성은 단순 비율이 아닌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질적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으며, 장애인단체의 대표자로 장애인당사에 대해 필요성은 공감하나 장애 여부만으로 대표성 확보는 부족하다는 의견의 존재하였음
- 또한, 장애인 범주 확장에 대해 당사자 외 가족(제한적 인정 필요), 활동가 또는 전문가 집단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과 자조모임 등은 인정 가능하나 개념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제안되었음

〈표 3-4〉 1차 델파이조사 결과 - 대표성

문항	적절성					적용 가능성				
	평균 (SD)	수렴도	합의도	CVR	비고	평균 (SD)	수렴도	합의도	CVR	비고
1-1. 장애인단체의 최고 의결기구(이사회 또는 총회) 구성원에는 장애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4.78 (0.43)	0.13	0.95	1.00	종료	4.78 (0.43)	0.13	0.95	1.00	종료
1-2. 장애인단체의 최고 의결기구(이사회 또는 총회)는 과반수(50%)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94 (1.16)	1.00	0.56	0.11	수정	3.89 (1.08)	1.00	0.50	0.22	수정
1-3. 장애인단체의 대표자(이사장, 회장 등)는 장애인이어야 한다.	3.61 (1.42)	1.13	0.44	0.11	수정	3.78 (1.17)	1.00	0.50	0.22	수정
1-4. 장애인단체의 회원은 장애인(또는 장애인단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4.89 (0.32)	0.00	1.00	1.00	종료	4.89 (0.32)	0.00	1.00	1.00	종료
1-5. 장애인단체의 회원은 과반수(50%)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4.22 (1.11)	1.00	0.60	0.44	수정	4.22 (1.11)	1.00	0.60	0.44	수정
1-6-1. 장애인단체의 대표성 판단 시, '장애인 당사자'를 장애인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4.78 (0.94)	0.00	1.00	0.89	종료	4.89 (0.47)	0.00	1.00	0.89	종료
1-6-2. 장애인단체의 대표성 판단 시, '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를 장애인 범주에 포함하여 간주하여야 한다.	3.17 (1.25)	1.00	0.33	-0.11	수정	3.50 (1.29)	1.50	0.25	0.11	수정
1-6-3. 장애인단체의 대표성 판단 시, '비장애인 활동가(옹호가)'를 장애인 범주에 포함하여 간주하여야 한다.	2.72 (0.96)	1.00	0.00	-0.33	기각	3.00 (1.14)	1.00	0.33	-0.11	기각



문항	적절성					적용 가능성				
	평균 (SD)	수렴도	합의도	CVR	비고	평균 (SD)	수렴도	합의도	CVR	비고
1-6-4. 장애인단체의 대표성 판단 시, '장애 관련 전문가(예: 장애인재활상담사, 수어통역사, 언어재활사 등)'를 장애인 범주에 포함하여 간주하여야 한다.	2.17 (1.20)	0.63	0.38	-0.78	기각	2.50 (1.29)	0.75	0.25	-0.56	기각
1-7-1. '장애 유형별 당사자조직(예: 시각·청각·지체장애인 연합회 등)'을 장애인단체로 간주하여야 한다.	4.78 (0.73)	0.00	1.00	0.89	종료	4.78 (0.73)	0.00	1.00	0.89	종료
1-7-2. '장애인 연합조직 또는 범장애 우산조직(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DPI 등)'을 장애인단체로 간주하여야 한다.	4.33 (0.97)	0.63	0.75	0.56	수정	4.50 (0.79)	0.50	0.80	0.67	수정
1-7-3. '장애인 부모회 및 부모조직'을 장애인단체로 간주하여야 한다.	3.67 (1.08)	1.00	0.50	0.11	수정	3.83 (1.04)	1.00	0.50	0.22	수정
1-7-4. '장애인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를 장애인단체로 간주하여야 한다.	2.89 (1.28)	1.00	0.00	-0.33	기각	3.11 (1.23)	1.00	0.33	-0.22	기각
1-7-5. '장애인 관련 시민사회단체(NGO·NPO)'를 장애인단체로 간주하여야 한다.	3.28 (1.02)	1.00	0.33	-0.11	수정	3.33 (1.08)	1.00	0.33	-0.11	수정
1-7-6.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장애인단체로 간주하여야 한다.	2.39 (1.20)	0.50	0.50	-0.67	기각	2.83 (1.38)	1.13	-0.13	-0.44	기각
1-7-7. '자조모임 또는 커뮤니티 기반 조직'을 장애인단체로 간주하여야 한다.	3.17 (1.20)	1.00	0.43	0.00	수정	3.00 (1.08)	1.00	0.33	-0.22	수정

(2) 목적성

- 장애인단체를 정의하기 위한 목적성 기준 문항 중 ‘2-1. 장애인단체의 설립 미션(비전)에 장애인의 권익, 역량강화, 사회참여 확대 등 장애인을 위한 공익적 가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2-2. 장애인단체가 수행하는 주요 사업은 장애인의 권익, 역량강화, 사회참여 확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2개 문항에서 적절성과 적용가능성 CVR 값이 1.00, 0.89로 장애인단체를 정의하기 위한 목적성 기준에 적절한 항목으로 평가되어 2차 조사에서 제외하였음.
- 그러나 목적성을 기준으로 장애인 대상 사업을 주로 하는 단체에 대한 인정여부는 부정적으로 나타나 1차 조사에서 종료(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 결과적으로 목적성 문항 3개 중 2개 문항은 1차 조사에서 종료하였으며, 1개 문항은 CVR 값 및 전문가 패널 의견 고려하여 1차 조사에서 종료(기각)하였음.
- 전반적으로 장애인단체의 목적성에 대해 단체는 권익옹호, 역량강화, 사회참여 확대 등 공익적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매우 높은 합의를 형성하였음.
- 그러나 단순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 여부만으로 장애인단체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서비스 제공기관과 권익옹호 단체의 구분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더불어 목적성 판단 기준에 설립 목적과 사업 간 일관성, 장애인 권익에 대한 기여 수준, 정책·제도 변화에 대한 영향력, 당사자 참여 수준 등 사회적 영향력과 구조적 변화 기여와 관련한 요소가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음



〈표 3-5〉 1차 델파이조사 결과 - 목적성

문항	적절성					적용 가능성				
	평균 (SD)	수렴도	합의도	CVR	비고	평균 (SD)	수렴도	합의도	CVR	비고
2-1. 장애인단체의 설립 미션(비전)에 장애인의 권익, 역량강화, 사회참여 확대 등 장애인을 위한 공익적 가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4.89 (0.32)	0.00	1.00	1.00	종료	4.89 (0.32)	0.00	1.00	1.00	종료
2-2. 장애인단체가 수행하는 주요 사업은 장애인의 권익, 역량강화, 사회참여 확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4.72 (0.75)	0.00	1.00	0.89	종료	4.78 (0.55)	0.00	1.00	0.89	종료
2-3. 장애인 대상 사업을 주로 하는 단체는 장애인단체에 포함할 수 있다.	2.61 (0.70)	0.50	0.60	-0.78	기각	2.94 (0.87)	0.63	0.58	-0.56	기각

(3) 제도적 기준

- 장애인단체를 정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준 문항은 대체적으로 적절성과 적용 가능성의 CVR 값이 최소 기준인 0.47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반영하여 ‘3-1. 장애인단체를 공적으로 인정하거나 재정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해당 조직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해야 한다.’ 항목과 ‘3-3-1. 활동실적’ 기준의 최근 2년간 지속적 사업 또는 프로그램 운영 실적과 활동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성과자료 보유 등은 1차 조사에서 종료하고, 이외 문항은 수정하여 2차 조사를 실시하였음
- 전반적으로 법적 등록, 기본 조직구조, 활동 실적 등은 공적 지원을 위한 최소 기준으로 필요하다는 데 전반적으로 합의되었음
- 그러나 조직의 규모 및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일률적 기준 적용의 한계와 활동 실적 기준의 모호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신생 장애인단체의 진입을 고려한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더불어 제도적 기준은 ‘배제 기준’이 아닌 공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준으로 지원 대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안되었음
- 결과적으로 제도적 기준 문항 7개 중 3개 문항만 1차 조사에서 종료하였으며, 4개 문항은 전문가 패널 의견을 반영한 수정 문항으로 2차 조사를 진행하였음

〈표 3-6〉 1차 델파이조사 결과 - 제도적 기준

문항		적절성					적용 가능성				
		평균 (SD)	수렴도	합의도	CVR	비고	평균 (SD)	수렴도	합의도	CVR	비고
3-1. 장애인단체를 공적으로 인정하거나 재정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해당 조직은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해야 한다.		4.67 (0.49)	0.50	0.80	1.00	종료	4.56 (0.62)	0.50	0.80	0.89	종료
3-2. 장애인단체 인정기준으로 대표와 회계·운영 담당 등 최소 2인 이상의 조직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4.11 (1.23)	0.50	0.78	0.67	수정	4.00 (1.19)	1.00	0.50	0.44	수정
3-3. 장애인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활동 실적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4.22 (0.81)	0.50	0.75	0.78	수정	4.28 (0.75)	0.50	0.75	0.67	수정
3-3-1. 활동 실적 기준	최근 1년간 활동 실적 2회 이상	3.88 (0.78)	0.25	0.88	0.44	수정	4.00 (0.71)	0.50	0.75	0.44	수정
	최근 2년간 지속적 사업 또는 프로그램 운영 실적	4.24 (0.66)	0.50	0.75	0.67	종료	4.24 (0.56)	0.50	0.75	0.78	종료
	활동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성과자료 보유	4.65 (0.49)	0.50	0.80	0.89	종료	4.47 (0.51)	0.50	0.75	0.89	종료
3-4. 장애인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기준으로 기관 운영경력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3.61 (1.04)	0.63	0.69	0.33	수정	3.78 (0.94)	0.63	0.69	0.33	수정



2) 2차 델파이조사 결과

-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서 수정 보완이 필요한 문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문지는 대표성 10개 문항, 제도적 기준 4개 문항 등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음
- 특히, 대표성 문항 중 2개 문항은 1차 조사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여 신규로 추가되었으며, 목적성 문항은 1차 조사에서 종료 또는 삭제되어 2차 조사에서는 실시되지 않았음
- 설문지는 배포된 18부 중 17부가 회수되어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2차 조사의 CVR 값은 회수된 설문지 기준 0.529로 설정하였음

(1) 대표성

- 장애인단체 정의를 위한 대표성 기준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당사 중심 구조와 당사자의 실질적 의사결정 참여 등(1-2 문항, 1-2-1 문항, 1-3 문항, 1-5 문항)에는 전문가 패널의 의견이 합치되는 반면, 장애인 당사자 범위 확장에 있어 가족 및 옹호인은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1차 조사에서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수행에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가족 및 옹호인의 제한적 인정도 의견으로 제시되었으나, 전문가 패널의 의견 합치를 이루지는 못했음
- 이에 대표자의 장애 당사자 여부 관련 문항(1-3-1)과 장애인 범주 확대에 대한 문항(1-6), 그리고 가족 및 옹호인으로 구성된 조직의 장애인단체 인정 여부에 관한 문항(1-7-3)은 CVR 기준값(0.529)에 크게 미치지 못했음
- 더불어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 및 운영되는 자조모임의 장애인단체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CVR 기준값(0.529)에 크게 미치지 못했음
- 결과적으로 2차 조사를 통해 나타난 장애인단체의 대표성은 단순한 구

성 비율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참여와 통제 구조를 중심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는 점,

- 가족·대리인 포함 여부, 예외적 대표 허용, 시민단체 및 자조모임의 포함 범위 등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장애인단체 개념의 경계 설정과 유형화 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함

〈표 3-7〉 2차 델파이조사 결과 - 대표성

문항	적절성				적용 가능성			
	평균 (SD)	수렴도	합의도	CVR	평균 (SD)	수렴도	합의도	CVR
1-2. 장애인단체의 최고 의결기구(이사회 또는 총회)는 과반수(50%) 이상을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4.29 (0.99)	0.75	0.70	0.53	4.06 (0.83)	1.00	0.50	0.41
1-2-1. 장애인단체는 수적 구성 요건과 더불어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주요 정책 및 운영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 절차(예: 당사자 자문기구, 정기적 의견수렴 절차, 당사자 동의 요건 등)를 마련하여야 한다.	4.53 (0.62)	0.50	0.80	0.88	4.29 (0.69)	0.50	0.75	0.76
1-3. 장애인단체의 대표자(이사장, 회장 등)는 장애인 당사자이어야 한다.	4.06 (1.09)	0.75	0.63	0.53	4.06 (0.75)	0.75	0.63	0.53
1-3-1. 의사소통 또는 의사결정 수행에 실질적 제한이 있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의 경우, 장애인 당사자가 대표직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의사결정 지원구조*를 갖춘 조건 하에 가족 또는 옹호인이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다. (*의사결정 지원구조: ①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지원하는 공식적 의사지원 체계를 갖춘 것 ② 공동대표 또는 공동 의사결정 구조 등 당사자의 실질적 통제권을 보장할 것 ③ 관련 절차를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명문화할 것)	3.35 (1.37)	0.75	0.63	0.18	3.71 (1.16)	0.75	0.63	0.41



문항	적절성				적용 가능성			
	평균 (SD)	수렴도	합의도	CVR	평균 (SD)	수렴도	합의도	CVR
1-5. 장애인단체의 회원은 과반수(50%) 이상을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의사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4.29 (0.85)	0.50	0.75	0.76	4.29 (0.77)	0.50	0.75	0.88
1-6. 장애인단체의 대표성 판단 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장애 아동 및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가족 및 법적 대리인*'을 장애인 구성원 범주에 포함하여 간주하여야 한다. (*가족 및 법정 대리인: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지원·대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 절차(당사자 의사확인, 지원관계 증빙 등)에 따른 대리인)	3.24 (1.09)	0.75	0.50	-0.18	3.41 (1.06)	0.50	0.75	0.06
1-7-2. 장애인 당사자 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연합조직 또는 범장애계 우산조직(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DPI 등)'을 장애인단체로 간주하여야 한다.	4.59 (0.80)	0.50	0.80	0.88	4.65 (0.79)	0.25	0.90	0.88
1-7-3.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당사자(장애 아동 및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의 권익 옹호를 목적으로 결성된 '장애인 부모회 및 가족조직'은 장애인단체(혹은 장애인 가족 단체)로 인정하여야 한다.	3.82 (1.19)	1.00	0.50	0.18	4.00 (1.12)	0.75	0.63	0.53
1-7-5. '장애인 권익 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NGO·NPO)'를 장애인단체로 간주하여야 한다	3.59 (0.87)	0.50	0.75	0.18	3.41 (0.94)	0.50	0.67	-0.06
1-7-7. 장애인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구성·운영하며, 당사자 역량강화 또는 권익 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자조모임(Self-help Group)'은 장애인단체로 간주하여야 한다.	3.59 (1.18)	0.75	0.63	0.18	3.53 (1.07)	0.50	0.75	0.06

(2) 제도적 기준

- 장애인단체 정의를 위한 제도적 기준에 대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조직의 기본 구조(3-2 문항), 활동 실적 기준(3-3 문항), 운영경력의 차등 적용(3-4 문항) 등에는 전반적으로 CVR 기준값(0.529) 이상으로 전문가 패널의 의견이 높은 수준으로 합치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실적을 재정 지원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3-3 문항)은 CVR 1.00으로 매우 높은 합의 수준을 보이며, 제도적 기준 중 가장 핵심적인 기준으로 도출됨.
- 다만, 신생단체 및 소규모 단체에 대한 예외 적용을 포함한 점에서 단일 기준이 아닌 유연한 적용 필요성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나타남
- 결국 조직 구조, 활동 실적, 운영 경력 등은 일률적 기준이 아니라 단체의 규모, 유형, 발전 단계 등을 고려한 차등적·단계적 기준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향후 장애인단체 분류체계 및 지원 기준 마련 시 중요한 설계 원칙으로 작용할 필요가 있음

〈표 3-8〉 2차 델파이조사 결과 - 제도적 기준

문항	적절성				적용 가능성			
	평균 (SD)	수렴도	합의도	CVR	평균 (SD)	수렴도	합의도	CVR
3-2. 장애인단체 인정기준으로 대표자와 회계·행정 담당자가 분리된 최소 2인 이상의 업무 분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설립 후 3년 이내 신생단체 또는 자조모임 등 소규모 단체의 경우 예외적으로 1인 활동체계를 인정할 수 있다.	4.29 (1.05)	0.50	0.80	0.76	4.24 (1.09)	0.50	0.80	0.65
3-3. 장애인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기준으로, 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활동 실적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4.82 (0.39)	0.00	1.00	1.00	4.65 (0.49)	0.50	0.80	1.00



문항	적절성				적용 가능성			
	평균 (SD)	수렴도	합의도	CVR	평균 (SD)	수렴도	합의도	CVR
3-3-3. 최근 1년간 단체 명의의 공식적인 주요 활동(행사, 교육, 캠페인 등) 실적 2회 이상	4.12 (0.99)	0.50	0.75	0.76	4.29 (0.59)	0.50	0.75	0.88
3-4. 장애인단체에 대한 재정 기준으로 운영 경력을 적용하되, 신규 단체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단체의 유형이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4.12 (0.60)	0.25	0.88	0.76	4.12 (0.70)	0.50	0.75	0.65

3. 장애인단체 정의 기준 도출

- 장애인단체 정의를 위한 대표성, 목적성, 제도적 기준 항목에 대한 2차례의 델파이조사를 거쳐 전문가 합의가 이루어진 문항을 종합하면 당사자 중심성과 공공성, 정책적 실행 가능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정교화되고 있음
- 대표성은 단순한 구성 비율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참여와 통제 구조를 중심으로 재정의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 과정에서 장애인단체의 대표성은 ‘당사자성’에 기반하여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원칙으로 도출되었음
- 기존에는 의결기구 또는 회원 구성에서 장애인의 비율과 같은 수적 기준이 대표성 판단의 주요 요소로 논의되었으나, 전문가 패널은 이러한 기준만으로는 장애인단체의 본질적 대표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함
- 이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정책 및 운영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절차적 장치(예: 자문기구, 의견수렴 구조 등)의 필요성이 강조됨

- 즉, 대표성은 단순히 ‘누가 포함되어 있는가’의 문제가 아닌 ‘누가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수적 기준과 절차적 기준이 결합된 형태로 구조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가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나타남
- 목적성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 수행 여부가 아니라, 장애인의 권익과 사회참여 확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공익적 기능을 중심으로 규정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장애인단체의 목적성은 단순한 사업 대상이나 활동 내용이 아니라, 해당 조직이 장애인의 권리 실현, 사회적 영향력 확대,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리됨
- 이는 장애인단체를 ‘서비스 제공 조직’과 구분하고, ‘권익 기반 조직’으로 재정립하려는 경향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됨
- 제도적 기준은 장애인단체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이라기보다 공적 지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요건으로 설정되는 경향을 보임
- 전문가 패널은 법적 등록 여부, 기본적인 조직 구조, 활동 실적, 운영 경력 등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였으나,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조직 규모, 유형, 발전 단계에 따라 기준을 차등 적용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특히 신생단체나 소규모 단체의 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유연한 기준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 즉, 제도적 기준은 획일적인 요건이 아니라 공공성, 책임성, 실행 가능성을 고려한 단계적·차등적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9〉 델파이조사 종합

기준	문항		비고
대표성	장애인단체의 최고 의결기구(이사회 또는 총회) 구성원에는 장애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1차합의
	장애인단체의 최고 의결기구(이사회 또는 총회)는 과반수(50%) 이상을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2차합의
	장애인단체는 수적 구성 요건과 더불어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주요 정책 및 운영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 절차(예: 당사자 자문기구, 정기적 의견수렴 절차, 당사자 동의 요건 등)를 마련하여야 한다.		2차합의
	장애인단체의 대표자(이사장, 회장 등)는 장애인 당사자이어야 한다.		2차합의
	장애인단체의 회원은 장애인(또는 장애인단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차합의
	장애인단체의 회원은 과반수(50%) 이상을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의사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차합의
	장애인단체의 대표성 판단 시, '장애인 당사자'를 장애인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1차합의
	'장애 유형별 당사자조직(예: 시각·청각·지체장애인 연합회 등)'을 장애인단체로 간주하여야 한다.		1차합의
	장애인 당사자 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연합조직 또는 범장애계 우산조직(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DPI 등)'을 장애인단체로 간주하여야 한다.		2차합의
목적성	장애인단체의 설립 미션(비전)에 장애인의 권익, 역량강화, 사회참여 확대 등 장애인을 위한 공익적 가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1차합의
	장애인단체가 수행하는 주요 사업은 장애인의 권익, 역량강화, 사회참여 확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1차합의
제도적 기준	장애인단체를 공적으로 인정하거나 재정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해당 조직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해야 한다.		1차합의
	장애인단체 인정기준으로 대표자와 회계·행정 담당자가 분리된 최소 2인 이상의 업무 분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설립 후 3년 이내 신생단체 또는 자조모임 등 소규모 단체의 경우 예외적으로 1인 활동체계를 인정할 수 있다.		2차합의
	장애인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기준으로, 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활동 실적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차합의
	활동 실적 기준	최근 1년간 단체 명의의 공식적인 주요 활동(행사, 교육, 캠페인 등) 실적 2회 이상	2차합의
		최근 2년간 지속적 사업 또는 프로그램 운영 실적	1차합의
		활동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성과자료 보유	1차합의
	장애인단체에 대한 재정 기준으로 운영 경력을 적용하되, 신규 단체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단체의 유형이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차합의

Ⅳ. 장애인단체 개념 정의 및 유형화

1. 장애인단체의 개념 정의(안)
2. 장애인단체 유형 분류체계

IV. 장애인단체 개념 정의 및 유형화

1. 장애인단체의 개념 정의(안)

1) 개념 정의의 전제와 접근 틀

- 앞 장의 이론적 검토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국내 선행연구들은 장애인 단체의 비영리성·자발성·민주성이라는 공통 속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연구자와 기관의 가치와 철학에 따라 개념의 강조점과 조작적 정의가 상이하여 통일된 개념 정립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개념적 분절은 개별 단체가 설립 목적·운영 방식·대상 장애유형에 따라 고유한 조직적 특성을 지닌다는 현실적 다양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일한 정의 틀로 포착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내포되어 있음 (한국장애인재단, 2022; Wright, 1980)
- 국제적 차원에서는 UN CRPD 일반논평 제7호(2018)가 장애인에 의한 주도와 통제를 핵심 요건으로 하는 '대표 단체(representative organisations)' 개념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협의의 당사자 단체(DPO)에 적용되는 규범적 기준에 한정됨
 - 실제로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의 장애인 정책 생태계는 당사자 단체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서비스 제공기관·가족단체·전문가 조직 등 다양한 유형의 조직이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다층적 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며, CRPD 기준만으로는 이러한 현실적 다양성을 온전히 포섭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됨
- 이에 본 연구는 문헌 분석·선행연구 검토·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장애인단체의 개념을 단일 기준으로 획일화하기보다 '당사자성'의 수준과 조직이 수행하는 기능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원적 분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정책적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협의의 정의와 현장의 다양한 조직 유형을 포괄하는 광의의 정의를 상호 보완적으로 구축하고자 함



2) 장애인단체 개념 정의(안)

- 이상의 검토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단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함
- 장애인단체란 장애인의 권익 증진·자립·사회통합·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장애인 당사자 또는 이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비영리 조직체로서, 권익옹호·직접 서비스 제공·서비스 및 정책 체계 지원 등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함
- 본 연구에서는 단체의 범주를 장애인 당사자 중심 조직에 한정하지 않고, 가족단체·서비스 제공기관·전문가 단체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을 채택함
- 국내 장애인 정책 현장에서 실제로 기능하는 조직 유형의 다양성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기 위함임
- 다만, 당사자성의 수준과 수행 기능이 조직마다 상이함에 따라 정책적 지원의 범위와 방식 또한 조직 유형에 따라 달리 설계되어야 함

3) 장애인단체 개념의 핵심 구성 요소

(1) 비영리성 및 공익성

- 장애인단체는 특정인의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장애인 및 장애 관련 공익을 위해 운영되는 조직임(이익섭, 2003; 한국장애인재단, 2022)
- 최근 일부 단체가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생산시설로 지정받아 수익사업을 병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목적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며 비영리·공익 조직으로서의 본질적 성격을 변화시키지는 않음

(2) 자발적 결사 및 민주적 운영

- 장애인단체는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의지에 기반하여 결성되며, 회원 간 동등한 권리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내부 원칙으로 갖추어야 함(한국장애인재단, 2022)
- 이는 CRPD 일반논평 제7호가 강조하는 '장애인단체의 독립성' 기준과도 부합되며,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은 단체가 외부 압력에 종속되지 않고 당사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핵심 요건임

(3) 장애 관련 목적성

- 조직의 설립 목적과 주요 활동이 명시적으로 장애인의 권익 증진·서비스 제공 또는 관련 정책·제도 개선과 연결되어야 함
- 장애인 관련 의의는 장애 당사자를 주요 수혜 대상으로 하거나, 장애인 관련 정책·제도·서비스 체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 장애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학술기관이나 비장애인 중심의 일반 자원봉사단체 등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봄

(4)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 장애인단체는 공공기관이나 정당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비정부 조직체임
-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더라도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와 활동 방향에 대한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독립성은 단체가 장애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갖는 대표성·중립성·신뢰성의 제도적 근거가 됨



2. 장애인단체 유형 분류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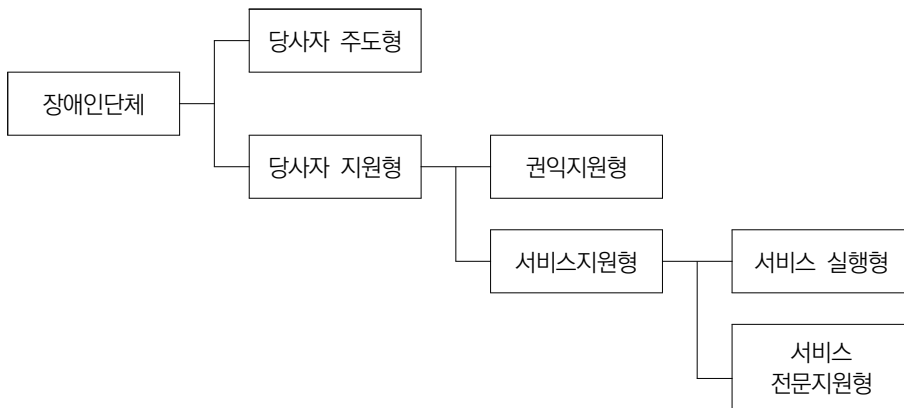
1) 장애인단체 유형 분류

- 장애인단체에 대한 유형 분류는 단순한 조직 특성의 구분을 넘어, 공적 지원의 정당성과 더 나아가 정책적 대상 설정을 위한 핵심 기준으로 작용함. 따라서 장애인단체의 분류는 기능이나 활동영역 중심이 아닌 해당 조직이 장애인을 어떻게 대표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특히 장애인의 권리와 참여를 강조하는 국제적 흐름과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 장애인단체의 핵심 기준은 ‘당사자성’에 두어야 할 것임
- 즉, 장애인단체는 단순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조직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가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갖는 조직으로 이해되어야 함
-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이 스스로를 대표하는 조직”과 “장애인을 위한 조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전자의 조직이 보다 높은 대표성을 가진다 할 것임
- 아울러 본 연구에서 실시한 델파이조사 결과에서도 장애인단체의 대표성은 단순한 구성 비율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참여와 통제 구조를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가 패널의 높은 수준에서 합의가 도출되었음. 또한 가족단체, 전문가단체, 서비스 제공기관 등 다양한 조직 유형에 대해서는 배제보다는 기능적 차이를 고려한 구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와 같은 이론적 원칙과 경험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단체를 1차적으로 당사자성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위계적 분류체계를 제안함. 이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가 조직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당사자 주도형 단체’를 핵심 유형으로 설정함. 이는 장애인 당사자가 조직 운영과 정책 방향 설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장애인단체의 대

표성을 가장 충실히 구현하는 형태로, 재정 지원 등 정책적으로 우선 고려 대상이 됨

- 그러나 장애인 관련 영역에는 당사자 주도형 단체 외에도 다양한 조직이 존재하며, 이들 역시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텔파이조사에서도 이들 조직에 대한 완전한 배제보다는 역할과 기능에 따른 구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당사자 주도형에 해당하지 않는 조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당사자 지원형 단체’로 설정하고, 이를 기능에 따라 세분화하고자 함. 이는 장애인 당사자가 조직의 의사결정을 직접 통제하지는 않지만, 장애인 지원을 목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권익지원형 단체와 서비스 지원형 단체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서비스 지원형은 서비스 실행형 단체와 서비스 전문지원형 단체로 다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4-1] 장애인단체 유형 분류체계





〈표 4-1〉 장애인단체 유형별 개념

유형	개념
당사자 주도형	장애인 당사자가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며, 조직 운영과 정책 방향 설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로서, 장애인단체의 대표성과 당사자성을 가장 충실히 구현하는 유형
당사자 지원형	장애인 당사자가 조직의 의사결정을 직접 통제하지는 않지만,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다양한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 유형
권익지원형	가족 또는 보호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를 대변하거나 지원하는 방식으로 권익옹호, 정책 개선, 제도적 요구 활동을 수행하는 유형
서비스 지원형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적 서비스 제공 또는 서비스 체계 지원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하는 유형
서비스 실행형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 돌봄, 고용, 교육 등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로서, 복지관 및 시설 등 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 실행 주체
서비스 전문지원형	장애인재활상담사, 언어재활사 등 장애 관련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서비스의 질 관리, 전문성 강화, 교육 및 정책 자문 기능을 수행하며 서비스 체계를 지원하는 역할

-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장애인단체 유형 분류체계는 당사자성을 중심으로 한 위계적 구조를 기반으로 하되, 당사자 지원형 단체를 기능별로 세분화함으로써 장애인 관련 조직의 다양성과 역할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자 하였음. 이는 장애인단체를 단일 기준으로 단순화하는 접근을 넘어, 대표성과 기능을 동시에 고려한 분류체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 또한, 본 분류체계는 향후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당사자 주도형 단체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다양한 지원형 단체의 기능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2) 장애인단체 단계별 분류체계

- 앞 절의 유형 분류체계는 개별 단체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실제로 판별할 수 있는 조작적 기준을 수반할 때 정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1단계 대표성 기준과 2단계 목적성·기능성 기준으로 구성된 위계적 2단계 분류 절차를 제안함. 각 기준은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합의 사항을 반영하여 수립하였으며, 형식적 요건 충족보다 실질적 운영구조를 중심으로 설계됨

(1) 대표성 기준(당사자 주도형 판별)

- 1단계는 조직 내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 의사결정 참여 및 통제 구조를 기준으로 당사자 주도형 여부를 판별하는 단계임
- 델파이조사에서 전문가 패널은 대표성의 핵심을 단순한 구성 비율이 아닌 실질적 의사결정 참여와 통제 구조로 규정하는 데 높은 수준에서 합의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5개 세부 기준을 설정함
- 5개 기준 가운데 ① ‘대표자가 장애인 당사자인가’는 필수 요건으로 설정함
 -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나머지 기준의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당사자 주도형으로 분류되지 않음. 나머지 기준은 ② ‘의결기구(이사회·총회 등)에 장애인 당사자 과반 이상 참여 여부’와 ③ ‘회원 구성 중 장애인 당사자의 주요 비중 여부 가운데 1개 이상’, 그리고 ④ ‘당사자 의견 반영을 위한 공식 의사결정 절차 존재 여부’와 ⑤ ‘주요 의사결정의 당사자 참여하에 이루어짐 여부’ 가운데 1개 이상을 각각 충족하여야 함
 - 즉 ① 필수 + (② 또는 ③) + (④ 또는 ⑤)의 조합, 총 3개 이상 충족 시 당사자 주도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러한 조합 방식은 규모가 작거나 설립 초기에 있는 풀뿌리 당사자 조직도 포함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임



(2) 목적성·기능성 기준

- 1단계에서 당사자 주도형으로 분류되지 않은 조직은 수행 기능과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는 2단계로 이행함
- 2.1단계는 조직의 주된 활동이 권익옹호·정책 대응 등 대변 기능 중심인지, 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및 체계 지원 기능 중심인지를 기준으로 권익지원형과 서비스지원형을 구분함
 - 권익지원형과 서비스지원형의 판별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관상 목적 조항과 실제 사업비 비중을 기준으로 주된 기능을 판별함
- 서비스지원형으로 분류된 단체는 2.2단계에서 수행 기능의 성격에 따라 서비스 실행형과 서비스 전문지원형으로 세분화됨
 -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는 실행 주체인지, 서비스 체계의 질 관리와 전문성 지원을 담당하는 후방 지원 주체인지를 기준으로 구분함

(3) 경계 사례의 경우 판단 기준

- 복수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단계별 기준 적용 과정에서 유형 귀속이 모호한 경우에는 정관상 설립 목적을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후 최근 2개년 사업비 지출 비중과 주요 사업 실적을 보조 지표로 활용하며, 필요시 담당 기관의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 유형을 결정하도록 함
- 아울러 단체의 활동 방향과 조직 구성은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유형 분류는 정기적 재심사 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표 4-2〉 장애인단체 단계별 유형 분류

단계	기준	세부기준	유형 분류
1단계	대표성	1. 대표자가 장애인 당사자인가 2. 의결기구(이사회, 총회 등)에 장애인 당사자가 과반 이상 참여하고 있는가 3. 회원 구성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가 4.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위원회, 총회 등)가 존재하는가 5. 조직의 주요 의사결정이 당사자의 참여 하에 이루어지는가 ※ ① + (②또는③) + (④또는⑤) 충족 필요	당사자 주도형
2-1 단계	목적성	1. 장애인의 권익옹호, 인권, 정책 개선 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가 2. 제도 개선, 법·정책 대응 활동이 주요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가 3.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리 보장을 주요 목표로 하는가 ※ 이상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필요	권익지원형
		1.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서비스(재활, 돌봄, 교육, 고용 등)를 제공하는가 2. 기관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이 주요 기능인가 ※ 이상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필요	서비스 지원형
2-2 단계	기능성	1. 이용자 대상 직접 서비스 제공이 핵심 기능인가 2. 복지관, 시설 등 현장 중심 서비스 운영 조직인가 ※ 이상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필요	서비스 실행형
		1. 전문가(재활상담사, 언어재활사 등) 중심 조직인가 2. 교육, 자격, 연구, 정책 자문 기능이 주요 활동인가 3. 직접 서비스 제공보다는 서비스 체계 지원 역할인가 ※ ① + (②또는③) 충족 필요	서비스 전문지원형

3) 보완적 기준

- 본 연구의 델파이조사에서 장애인단체의 유형 분류 기준으로 대표성과 목적성이 핵심적으로 도출된 반면, 제도적 기준은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직접적인 기준이라기보다 지원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참고 기준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제도적 기준은 장애인단체를 선별하거나 배제하기 위한 기준으로 적용하기보다, 조직의 기본 요건, 활동의 지속성, 공공성과 책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보완적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제도적 기준은 법적 등록 여부 및 조직 구조와 같은 형식적 기반, 일정 기간 동안의 활동 실적과 지속성, 그리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익적 기여 수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구성하도록 함
- 이와 같은 기준은 장애인단체의 유형 분류 이후, 재정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활용될 수 있음

〈표 4-3〉 장애인단체의 제도적 기준

기준	고려 사항
형식적 기반	- 법적 등록 여부(비영리법인, 단체 등록 등) - 기본 조직 구조 존재 여부(대표, 운영체계) (단, 3년 이내 조직은 예외 적용)
활동 지속성 및 안정성	- 최근 1~2년간 활동 실적 존재 여부(장애 관련 프로그램) - 단발성 조직인지 여부 - 지속적 운영 여부
공공성 및 책임성	- 재정의 투명성(예·결산 공개) - 사업 수행의 공익성

V. 정책적 함의 및 제언

1. 정책적 함의
2. 제언

V. 정책적 합의 및 제언

1. 정책적 합의

1) 장애인단체 개념 정립 필요

- 장애인단체는 정책 현장과 지원사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나, 그동안 명확한 판단 기준이 부족했음
- 개념의 불명확성은 지원 대상 선정, 자원 배분, 사업 평가, 단체 간 형평성 확보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장애인단체의 개념 정립은 단순한 용어 정의가 아니라, 지원체계의 기준을 마련하는 핵심 작업임
- 지원기관은 명확한 개념과 기준에 따라 지원사업을 운영함으로써 공정성, 투명성,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장애인 당사자성 중심의 지원 필요

- 장애인단체는 단순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고 권익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이해되어야 함
- 따라서 지원체계는 단체의 사업 수행 능력뿐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조직 참여와 의사결정 영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함
- 특히 장애인 당사자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함
- 다만 장애인단체에는 당사자 단체, 가족단체, 서비스 제공기관, 연합조직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므로, 단체 성격에 따른 차등적 지원이 필요함



3) 장애인단체 유형화 필요

- 장애인단체는 설립 목적, 운영 주체, 활동 방식, 수행 기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함
- 따라서 모든 장애인단체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기보다,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가 필요함
- 유형화는 지원 대상 선정, 심사 기준 마련, 성과평가, 역량강화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

4) 제도적 기준의 유연한 적용

- 장애인단체 지원에는 법적 등록 여부, 조직 구조, 활동 실적, 회계 투명성 등 일정한 제도적 기준이 필요함
- 이러한 기준은 지원사업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장치로 활용될 수 있음
- 그러나 제도적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신생 단체, 소규모 단체, 자조모임 등이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
- 따라서 제도적 기준은 배제 기준이 아니라, 단체의 책임성과 성장 가능성을 함께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어야 함

2. 제언

1) 장애인단체 인정 기준 구분

- 장애인단체란 장애인의 권익 증진·자립·사회통합·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장애인 당사자 또는 이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비영리 조직체로서, 권익옹호·직접 서비스 제공·서비스 및 정책 체계 지원 등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함
- 본 연구에서는 단체의 범주를 장애인 당사자 중심 조직에 한정하지 않

고, 가족단체·서비스 제공기관·전문가 단체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을 채택함

- 다만 지원사업의 목적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와 심사 기준은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단체의 유형, 당사자성, 목적성, 제도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단체 심사 기준의 체계화

- 지원사업 심사 기준은 행정서류 중심에서 벗어나 단체의 목적, 대표성, 공익성,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공통 기준으로는 비영리성, 공익성, 장애 관련 목적성, 조직 운영체계, 재정 투명성, 활동 지속성, 장애인 당사자 참여 정도 등을 고려할 수 있음

3) 향후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단체 지원은 장애인단체를 장애인의 권리 실현과 사회변화를 이끄는 주체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함

- 장애인단체 개념 및 유형 기준 명문화
- 지원사업별 대상 단체 범위 명확화
- 유형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 당사자 참여 기준 강화
- 신생·소규모 단체 성장지원 체계 마련
- 제도적 기준과 현장 유연성의 균형 확보
- 지원 이후 역량강화 및 성과관리 연계



- 4)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장애인단체의 유형 분류체계에 따라, 장애인재단의 배분 사업에 신청한 단체와 지원이 결정된 단체에 적용하여, 각 단체 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분석하여 향후 배분 사업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2020).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 논평.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나운환. (2001).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장애인복지 시설 및 장애인단체 역할 연구: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나운환, 박경순, 류정진, 김동주, 강윤주, 박은아. (2024). 재활행정. 서울: 집문당.
- 이익섭. (2003). 장애인 당사자주의와 장애인인권운동. 서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이종성. (2001). 연구방법 21: 델파이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 임윤진. (2022). 수정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2015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의 개선방향 탐색. 대한공업교육학회지, 47(2), 67-96.
- 전지혜, 원영미. (2019). 장애인 단체 사업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효과분석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44(44), 213-243.
- 채혜선, 고명선, 박수인, 김인수. (2023).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농업 노동환경 실태 조사항목 개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4(1), 393-407.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국제장애인 권리 및 입법의 발달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19). 장애인단체 실무자매뉴얼. 서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한국장애인재단. (2022). 2021년 장애인단체 현황 및 운영실태 연구. 서울: 한국장애인재단.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25).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단체 역할과 역량강화 연구. 서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Cabinet Office, Government of Japan. (n.d.). *Annual report on government measur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kyo: Cabinet Office. <http://www8.cao.go.jp/shougai/whitepaper/>
-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Rehabilitation Facilities. (2024). *CARF international*. <http://www.carf.org/>
-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8). *General*



comment No. 7 on the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lud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ir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in the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the convention (CRPD/C/GC/7). New York: United Nations.

Disability Rights UK. (2023). *DPO sector analysis: Part 1. The DPO sector research report (1st ed.)*. London: Disability Rights UK.

DPI-Japan. (2023). *About DPI Japan*. Tokyo: DPI-Japan.
<https://www.dpi-japan.org/about/>

European Network on Independent Living. (2022). *General comment 7 explains criteria for disabled people's organisations*. Brussels: ENIL.
<https://enil.eu/general-comment-7-explains-criteria-for-disabled-peoples-organisations/>

Hsu, C. C., & Sandford, B. A. (2007). The delphi technique: Making sense of consensus.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and Evaluation*, 12(1).

Lawshe, C. H.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4).

Murry, J. W., Jr., & Hammons, J. O. (1995). Delphi: A versatile methodology for conducting qualitative research. *The Review of Higher Education*, 18(4), 423-436.

National Civic League. (2019). *The civic index (4th ed.)*. Denver, CO: National Civic League.

National Council on Independent Living. (2024). About independent living. Washington, D.C.: NCIL. <https://ncil.org/about/independent-living/>

Rowe, G., Wright, G., & Bolger, F. (1991). Delphi: A reevaluation of research and theory.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39(3), 235-251.

Wright, G. N. (1980). *Total rehabilitation*. Boston: Little Brown & Company.

부록

1. 전문가 델파이조사 1차 설문지

장애인단체 개념 정립과 분류체계 구축 방안연구 - 전문가 의견조사 -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장애인의 권익, 역량강화, 사회참여 확대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장애인단체의 개념 정립 및 유형화 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조사입니다. 본 조사를 통해 한국장애인재단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단체의 정의, 기능적 역할, 유형 구분 기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적·실천적 활용이 가능한 분류체계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응답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실천 경험에 기반한 판단으로서 연구의 타당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것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통계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응답 결과에 대한 비밀은 보호됩니다.

바쁘신 중에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1월

연구책임자 : 성신여자대학교 이승기 교수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애인재단 장애통합연구본부 김보미 연구원

02-6399-6235 / research@kfpd.org



I	응답자 일반현황		
성명		소속기관명	
직위		연령	만 ()세
현 소속기관 경력	약 ()개월	장애 분야 전체 근무경력	약 ()개월
최종학력	① 학사 ② 석사 ③ 박사	전공 (최종학력 기준)	()

※ 응답에 앞서 아래의 사항을 충분히 읽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 및 민간재단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성격과 운영방식이 매우 다양한 단체들이 존재하며, 이들 중 어떤 단체를 '장애인단체(organiz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로 인정하고 공적 지원의 우선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1조에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CRPD 제4조 3항 및 제33조 3항이 장애인의 정책 및 사업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General Comment No. 7(2018)은 “장애인의 대표단체(Organiz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PDs)가 장애인 정책과 모니터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인단체를 ‘인정’하고 ‘공적 지원’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단체가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지속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사는 한국장애인재단의 사업 대상이 되는 장애인단체 인정기준(안)의 적절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되는 전문가 델파이조사입니다. 본 조사는 장애인단체 및 관련 정책·제도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토대로, 제안된 인정기준이 현장의 다양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또한 제도적으로 실현가능한 기준인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사는 다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대표성 - 단체가 실제로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가?
2. 목적성 - 단체의 비전과 사업이 장애인의 권익과 사회참여에 기여하는가?
3. 제도적 기준 - 법적 등록 및 기본 조직요건을 갖추었는가?
 -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활동해왔는가?

각 문항에 대해 (1) 적절성(5점 척도)과 (2) 적용 가능성(5점 척도)을 평가해 주시고, 필요시 의견이나 보완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응답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장애인단체 개념 정립 및 분류체계 구축의 기초자료로만 활용됩니다.



1. 대표성

문	항	적절성				적용 가능성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 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매우 가능하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가능하다
1-1.	장애인단체의 최고 의결기구(이사회 또는 총회) 구성원에는 장애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1	2	3	4	5	1	3	5
1-2.	장애인단체의 최고 의결기구(이사회 또는 총회)는 과반수(50%)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2	3	4	5	1	3	5
1-3.	장애인단체의 대표자(이사장, 회장 등)는 장애인이어야 한다.	1	2	3	4	5	1	3	5
1-4.	장애인단체의 회원은 장애인(또는 장애인단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2	3	4	5	1	3	5
1-5.	장애인단체의 회원은 과반수(50%)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2	3	4	5	1	3	5
1-6.	다음 문항은 장애인단체의 구성원 중 '장애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는 기존의 적절성과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1-6-1.	장애인단체의 대표성 판단 시, '장애인 당사자'를 장애인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1	2	3	4	5	1	3	5
1-6-2.	장애인단체의 대표성 판단 시, '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를 장애인 범주에 포함하여 간주하여야 한다.	1	2	3	4	5	1	3	5
1-6-3.	장애인단체의 대표성 판단 시, '비장애인 활동가(응호기)'를 장애인 범주에 포함하여 간주하여야 한다.	1	2	3	4	5	1	3	5
1-6-4.	장애인단체의 대표성 판단 시, '장애 관련 전문기관(예: 장애인재활상담사, 수어통역사, 언어재활사 등)'을 장애인 범주에 포함하여 간주하여야 한다.	1	2	3	4	5	1	3	5

1. 대표성(계속)

문	항	적절성					적용 가능성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 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매우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보통 이다	가능하다	매우 가능하다
1-7. 다음 문항은 장애인단체 인정 및 대표성 판단 시, 어떠한 유형의 조직을 '장애인단체'로 간주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묻는 문항입니다.											
1-7-1.	장애 유형별 당사자조직(예: 시각·청각·지체장애인 연합회 등)'을 장애인단체로 간주하여야 한다.	1	2	3	4	5	1	2	3	4	5
1-7-2.	'장애인 연합조직 또는 범장애 우산조직(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DPI 등)'을 장애인단체로 간주하여야 한다.	1	2	3	4	5	1	2	3	4	5
1-7-3.	'장애인 부모회 및 부모조직'을 장애인단체로 간주하여야 한다.	1	2	3	4	5	1	2	3	4	5
1-7-4.	'장애인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를 장애인단체로 간주하여야 한다.	1	2	3	4	5	1	2	3	4	5
1-7-5.	'장애인 관련 시민사회단체(NGO·NPO)'를 장애인단체로 간주하여야 한다.	1	2	3	4	5	1	2	3	4	5
1-7-6.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장애인단체로 간주하여야 한다.	1	2	3	4	5	1	2	3	4	5
1-7-7.	'자조모임 또는 커뮤니티 기반 조직'을 장애인단체로 간주하여야 한다.	1	2	3	4	5	1	2	3	4	5
1-8. 위 항목 중 1, 2로 응답한 경우, 또는 대표성 판단 시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추가 요소가 있다면 자유롭게 서술해주세요.											



2. 목적성

문 항	적절성					적용 가능성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 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매우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보통 이다	가능하다	매우 가능하다
2-1. 장애인단체의 설립 미션(비전)에 장애인의 권익, 역량강화, 사회참여 확대 등 장애인들 위한 공익적 가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1	2	3	4	5	1	2	3	4	5
2-2. 장애인단체가 수행하는 주요 사업은 장애인의 권익, 역량강화, 사회참여 확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1	2	3	4	5	1	2	3	4	5
2-3. 장애인 대상 사업을 주로 하는 단체는 장애인단체에 포함할 수 있다.	1	2	3	4	5	1	2	3	4	5
2-4. 위 항목 중 1, 2로 응답한 경우, 또는 목적성 판단 시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추가 요소가 있다면 자유롭게 제언해주세요.										

3. 제도적 기준

문	항	적절성					적용 가능성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 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매우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보통 이다	가능하다	매우 가능하다
3-1.	장애단체를 공적으로 인정하거나 재정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해당 조직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해야 한다.	1	2	3	4	5	1	2	3	4	5
3-2.	장애단체 인정기준으로 대표와 회계 운영 담당 등 최소 2인 이상의 조직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1	2	3	4	5	1	2	3	4	5
3-3.	장애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활동 실적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1	2	3	4	5	1	2	3	4	5
위 3-3. 활동 실적 기준의 적용 관련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의 적절성과 적용 가능성 정도를 응답해 주세요.											
3-3-1.	• 최근 1년간 활동 실적 2회 이상	1	2	3	4	5	1	2	3	4	5
	• 최근 2년간 지속적 사업 또는 프로그램 운영 실적	1	2	3	4	5	1	2	3	4	5
	• 활동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성과자료 보유	1	2	3	4	5	1	2	3	4	5
3-4.	장애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기준으로 기관 운영경력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1	2	3	4	5	1	2	3	4	5
3-4-1. 위 3-4. 운영경력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최소 운영경력을 기재해 주세요.		() 개월									
3-5. 위 항목 중 1, 2로 응답한 경우, 또는 제도적 기준 판단 시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추가 요소가 있다면 자유롭게 제언해주세요.											



2. 전문가 델파이조사 2차 설문지

장애인단체 개념 정립과 분류체계 구축 방안연구 - 전문가 의견조사(2차 조사) -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장애인단체 개념 정립과 분류체계 구축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장애인재단의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장애인단체의 인정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하는 2차 델파이 조사입니다.

1차 조사에서는 장애인단체의 대표성, 목적성, 제도적 기준 등 주요 영역에 대한 적절성 및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 중심성, 의사결정 참여 구조, 공적 책임성과 운영 기반 등과 관련하여 기준의 정교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본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결과의 정량적 분석값과 전문가 제안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일부 문항을 수정·보완하고, 수정된 인정 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합의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통계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응답 결과에 대한 비밀은 보호됩니다.

바쁘신 중에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2월

연구책임자 : 성신여자대학교 이승기 교수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애인재단 장애통합연구본부 김보미 연구원
02-6399-6235 / research@kfpd.org

※ 아래는 2차 델파이 조사에 대한 응답 방법입니다. 아래의 사항을 충분히 읽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 방법 안내

본 2차 델파이 조사는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보완된 문항에 대한 전문가 합의를 재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1차 조사에서 합의에 도달한 문항과 기각(삭제)된 문항은 제외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문항만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절성

‘적절성’은 해당 문항이 장애인단체 인정 기준으로서 이론적·정책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즉, 해당 기준이 장애인단체의 대표성, 목적성, 제도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개념적으로 타당하고 기준으로 채택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적용 가능성

‘적용 가능성’은 해당 문항이 현실의 제도·현장 여건에서 실제로 실행 가능하고 정책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수준인지를 의미합니다. 즉, 기준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행정적·운영상 무리 없이 제도와 및 집행이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문항〉은 참고만 하시고, 〈2차 조사 문항〉의 모든 문항(빨간색으로 작성된 문항)에 5점 척도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조사 결과의 환류 정보 제공

본 조사에서는 전문가의 재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각 문항별로 다음의 정보를 함께 제시합니다.

- 1차 조사 당시의 문항 내용
- 전문가 응답 결과에 대한 평균값 및 표준편차, 중앙값 등 통계적 분석 결과
- 1차 조사에서 제시된 주요 수정 의견을 반영한 문항 수정안

응답자께서는 이러한 환류 정보를 참고하시되, 귀하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독립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표성

	문 항	적절성				적용 가능성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 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매우 가능하지 않다	보통 이다	가능하다		
1-2.	〈1차 문항〉 장애인단체의 최고 의결기구(이사회 또는 총회)는 과반수(50%)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차 조사 문항〉 (수정방향: 수적 구성 요건과 실질 반영 절차 요건 구분) (수정 문항) 장애인단체의 최고 의결기구(이사회 또는 총회)는 과반수(50%) 이상을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추가 문항: 실질 반영 절차 요건) 1-2-1. 장애인단체는 수적 구성 요건과 더불어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주요 정책 및 운영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 절차(예: 당사자 자문기구, 정기적 의견수렴 절차, 당사자 등의 의견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1	2	3	4	5	1	2	3	4	5
1-3.	〈1차 문항〉 장애인단체의 대표자(이사장, 회장 등)는 장애인이어야 한다.										
	〈2차 조사 문항〉 (수정방향: 예외 규정 추가) 장애인단체의 대표자(이사장, 회장 등)는 장애인 당사자이어야 한다.										
	(신설: 예외 규정) 1-3-1. 의사소통 또는 의사결정 수행에 실질적 제한이 있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의 경우, 장애인 당사자가 대표직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의사결정 지원구조를 갖춘 하에 가족 또는 옹호인이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다. (*의사결정 지원구조: ①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 지원하는 공식적 의사지원 체계를 갖춘 것 ② 공동대표 또는 공동의사결정 구조 등 당사자의 실질적 통제권을 보장할 것 ③ 관련 절차를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명문화할 것)	1	2	3	4	5	1	2	3	4	5

1. 대표성(계속)

	문 항	적절성					적용 가능성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 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매우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보통 이다	가능하다	매우 가능하다
	〈1차 문항〉 장애인단체의 회원은 과반수(50%)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평균(표준편차)=4.22(1.11) 중위값=5.00 귀하의 1차 응답=					평균(표준편차)=4.22(1.11) 중위값=5.00 귀하의 1차 응답=				
1-5.	〈2차 조사 문항〉 (수정방향: 수적 구성과 함께 실질 참여 보장 추가) (수정문항) 장애인단체의 회원은 과반수(50%) 이상을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의사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2	3	4	5	1	2	3	4	5
1-6.	다음 문항은 장애인단체의 구성원 중 '장애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의 적절성과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1-6-2	〈1차 문항〉 장애인단체의 대표성 판단 시, '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를 장애인 범주에 포함하여 간주하여야 한다.	평균(표준편차)=3.17(1.25) 중위값=3.00 귀하의 1차 응답=					평균(표준편차)=3.50(1.29) 중위값=4.00 귀하의 1차 응답=				
	〈2차 조사 문항〉 (수정방향: CRPD 등을 고려한 가족 및 보호자의 범위 규정) (수정문항) 장애인단체의 대표성 판단 시, 의사결정 자원이 필요한 경우(장애 아동 및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가족 및 법적 대리인'을 장애인 구성원 범주에 포함하여 간주하여야 한다. (*가족 및 법정 대리인: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지원·대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 절차(당사자 의사확인, 지원관계 증빙 등)에 따른 대리인)	1	2	3	4	5	1	2	3	4	5



1. 대표성(계속)

문항		적절성					적용 가능성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 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매우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보통 이다	가능하다	매우 가능하다
1-7. 다음 문항은 장애인단체 인정 및 대표성 판단 시, 어떠한 유형의 조직을 '장애인단체'로 간주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묻는 문항입니다.		평균(표준편차)=4.33(0.97) 중위값=5.00 귀하의 1차 응답=					평균(표준편차)=4.50(0.79) 중위값=5.00 귀하의 1차 응답=				
1-7-2.	(2차 조사 문항) (수정방향: 당사자 회원기반 명확화) (수정문항) 장애인 당사자 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연합조직 또는 범장애 우산조직(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DPI 등)'을 장애인단체로 간주하여야 한다.	1	2	3	4	5	1	2	3	4	5
	(1차 문항) '장애인 부모회 및 부모조직'을 장애인단체로 간주하여야 한다.	평균(표준편차)=3.67(1.08) 중위값=4.00 귀하의 1차 응답=					평균(표준편차)=3.83(1.04) 중위값=4.00 귀하의 1차 응답=				
1-7-3.	(2차 조사 문항) (수정방향: 가족단체 범위 제한) (수정문항)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당사자(장애 아동 및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의 권익 옹호를 목적으로 결성된 '장애인 부모회 및 가족조직'은 장애인단체(혹은 장애인 가족 단체)로 인정하여야 한다.	1	2	3	4	5	1	2	3	4	5
	(1차 문항) '장애인 관련 시민사회단체(NGO-NPO)'를 장애인단체로 간주하여야 한다.	평균(표준편차)=3.28(1.02) 중위값=3.00 귀하의 1차 응답=					평균(표준편차)=3.33(1.08) 중위값=3.00 귀하의 1차 응답=				
1-7-5.	(2차 조사 문항) (수정방향: 권익옹호 목적 명시) (수정문항) '장애인 권익 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NGO-NPO)'를 장애인단체로 간주하여야 한다	1	2	3	4	5	1	2	3	4	5

1. 대표성(계속)

문항		적절성					적용 가능성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 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매우 가능하지 않다	보통 이다	가능하다	매우 가능하다		
1-7-7.	〈1차 문항〉 '지조모임 또는 커뮤니티 기반 조직'을 장애인단체로 간주하여야 한다.	평균(표준편차)=3.17(1.20) 중위값=3.50 귀하의 1차 응답=					평균(표준편차)=3.00(1.08) 중위값=3.00 귀하의 1차 응답=					
	〈2차 조사 문항〉 (수정방향: 당사자 주도성 강화) (수정문항) 장애인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구성 운영하며, 당사자 역량강화 또는 권리 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지조모임(Self-help Group)'은 장애인단체로 간주하여야 한다.	1	2	3	4	5	1	2	3	4	5	
1-8. 위 항목(대표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언해주세요.												

2. 목적성

목적성에 해당하는 문항은 1차 조사에서 수렴되어 종결되었거나, 낮은 타당도로 삭제 처리함.



3. 제도적 기준

	문	항	적절성				적용 가능성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 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매우 가능하지 않다	보통 이다	가능하다	
3-2.	〈1차 문항〉 장애인단체 인정기준으로 대표와 회계·운영 담당 등 최소 2인 이상의 조직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차 조사 문항〉 (수정방향: 조직분장 원칙과 예외 병행) (수정문항) 장애인단체 인정기준으로 대표자와 회계·행정 담당자가 분리된 최소 2인 이상의 업무 분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설립 후 3년 이내 신생단체 또는 자조모임 등 소규모 단체의 경우 예외적으로 1인 활동체계를 인정할 수 있다.	평균(표준편차)=4.11(1.23) 중위값=4.50 귀하의 1차 응답=				평균(표준편차)=4.00(1.19) 중위값=4.00 귀하의 1차 응답=				
			1	2	3	4	5	1	2	3	4
3-3.	〈1차 문항〉 장애인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활동 실적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차 조사 문항〉 (수정방향: 목적부합 실적 기준화) (수정문항) 장애인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기준으로, 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활동 실적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균(표준편차)=4.22(0.81) 중위값=4.00 귀하의 1차 응답=				평균(표준편차)=4.28(0.75) 중위값=4.00 귀하의 1차 응답=				
			1	2	3	4	5	1	2	3	4
위 3-3. 활동 실적 기준의 적용 관련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의 적절성과 적용 가능성을 응답해 주세요.											
〈1차 문항〉 • 최근 1년간 활동 실적 2회 이상			평균(표준편차)=3.88(0.78) 중위값=4.00 귀하의 1차 응답=				평균(표준편차)=4.00(0.71) 중위값=4.00 귀하의 1차 응답=				
〈2차 조사 문항〉 (수정방향: 공식활동 실적 기준화) (수정문항) 최근 1년간 단체 영의의 공식적인 주요 활동(행사, 교육, 캠페인 등) 실적 2회 이상											
			1	2	3	4	5	1	2	3	4
3-3-1.											

3. 제도적 기준(계속)

문항	적절성					적용 가능성				
	전혀 착설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보통 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매우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보통 이다	가능하다	매우 가능하다
〈1차 문항〉 3-4. 장애인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기준으로 기관 운영경력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3-4. 〈2차 조사 문항〉 (수정방향: 운영경력 차등적용) (수정문항) 장애인단체에 대한 재정 기준으로 운영 경력을 적용하되, 신규 단체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단체의 유형이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1	2	3	4	5	1	2	3	4	5
3-5. 위 항목(제도적 기준)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해주세요.										

한국장애인재단 2026-03

장애인단체의 개념 정립과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발 행 처 한국장애인재단

발 행 일 2026년 4월 30일

발 행 인 권 선 진

주 소 (04517)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86, 2층

전 화 02)6399-6235

홈페이지 <https://kfpd.org/>

인쇄처 디자인이인

ISBN 979-11-86957-15-8



주소 04517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86, 207
전화 02)6399-6235 홈페이지 <https://kfpd.org/>

